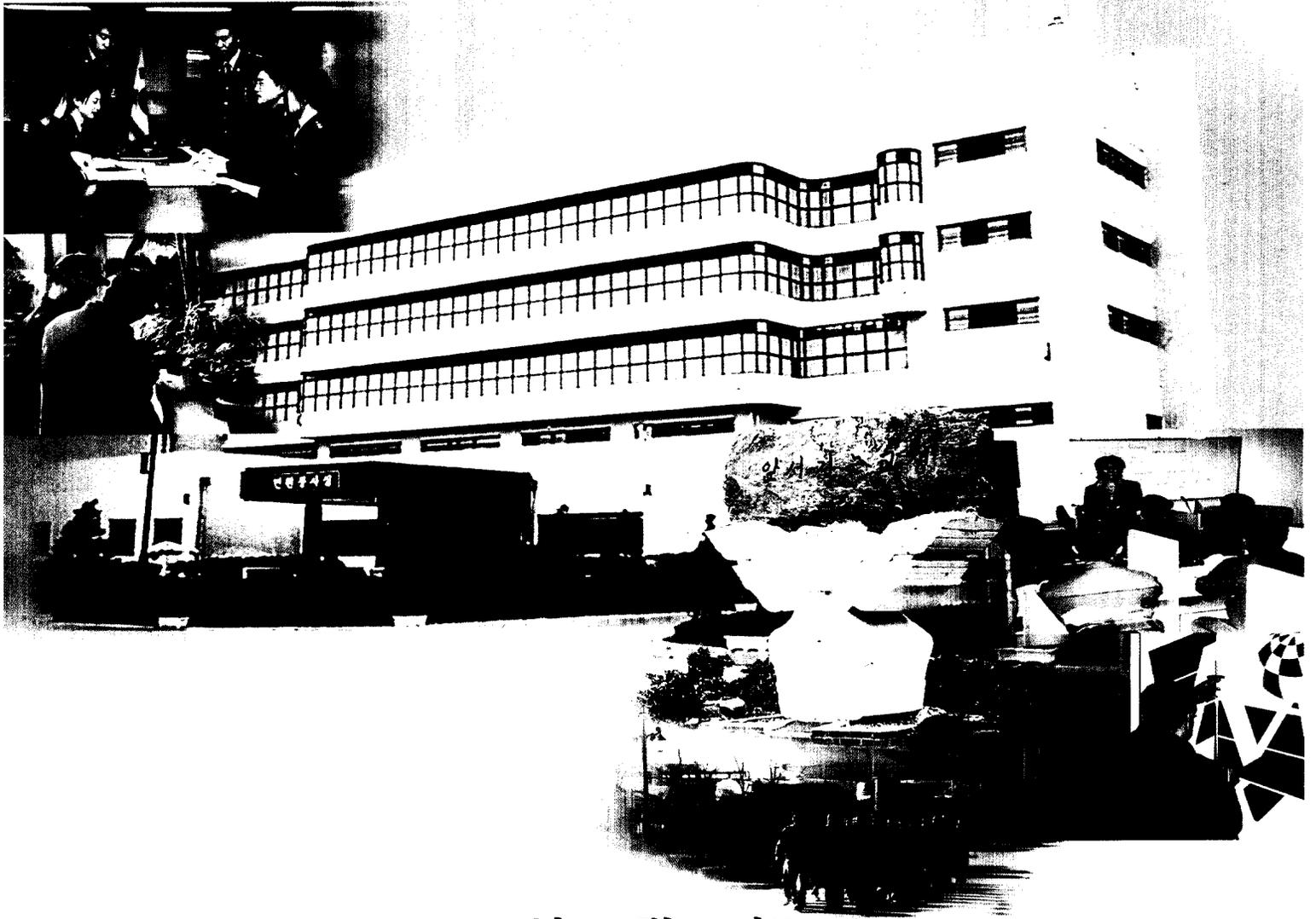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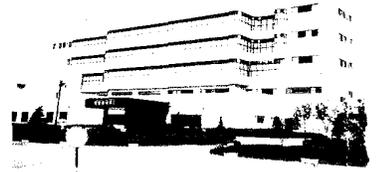
● 새千年새 矯正

GOVP 12016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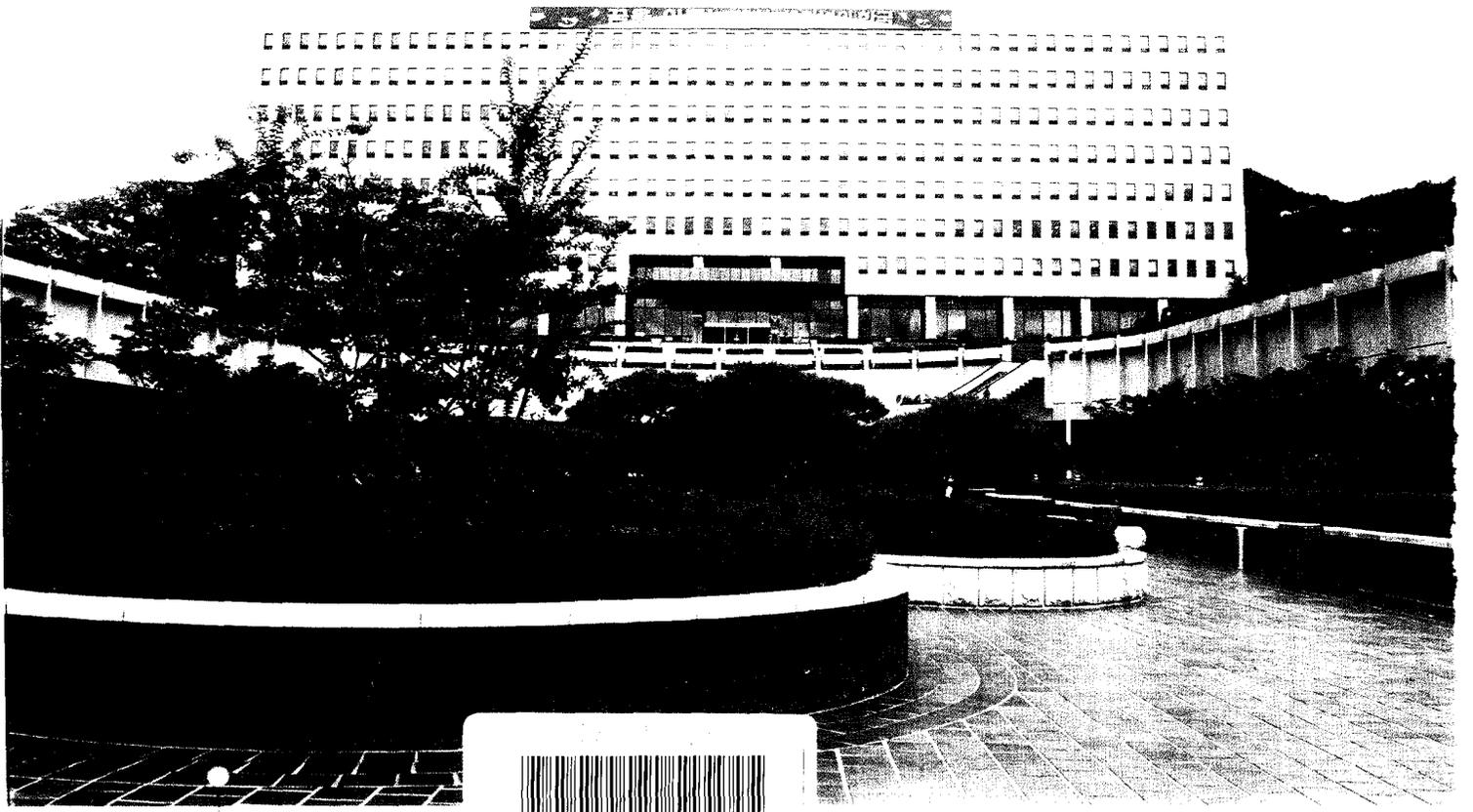
韓國의 矯正行政



法 務 部



표지·蔚山拘置所



Contents 目次

2000년
韓國의 矯正行政



제1장 機能

1. 격리기능	2
2. 교정교화기능	2
3. 미결수용 기능	2

제2장 沿革

1. 개요	3
2. 기구의 변천	4
가. 중앙기구	
나. 지방교정청	
다. 교정기관	
3. 법령정비	6
가. 행형법의 제정	
나. 행형법의 개정	
4. 시설의 개선	8
5. 처우제도의 발전	10

제3장 組織

1. 기 구	12
가. 중앙기구	
나. 지방교정청	
다. 교정기관	
2. 사무분장	19
가. 교정국	
나. 지방교정청	
다. 일선교정기관	
3. 각종 위원회	23
가. 중앙위원회	
나. 지방교정청	
다. 일선교정기관	

제4장 矯正行政 職員

1. 정 원	25
2. 임 용	25
3. 교육훈련	26
가. 법무연수원 교육	
나. 위탁교육	
다. 자체교육	

제5장 豫 算

제6장 收容者 處遇

1. 수 용	31
가. 수용인원 현황	
나. 분류수용	
2. 급 여	32
가. 급여기준	
나. 의류 등 일상용품	
3. 의료 및 보건	34
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진료	
나. 특수질환자 및 위급환자 진료	
다. 위생관리	
4. 외부교통	35
가. 접견	
나. 서신	
다. 전화사용	
5. 처우제도	36
가. 분류심사	
나. 누진처우	
6. 교정교화	39
가. 교정교육	
나. 교화활동	
다. 사회복귀 촉진	
라. 교정참여 확대	
7. 교도작업	50
가. 개요	
나. 운영형태	
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	
라. 교도작업관용주의의 채택	
마. 운영현황	
바. 작업상여금 및 조·위로금	
사. 외부통근작업	
아. 감호작업	
8. 직업훈련	54
가. 개요	
나. 직업훈련의 종류	
다. 기술자격 취득	
라. 기능경기대회 참가	
9. 석방	58
가. 만기석방	
나. 가석방	

제7장 收容者 權益伸張

1. 수용자 인권보장제도	61
가. 소장면담	
나. 정원	
다. 행정심판 등	
2. 수용자 권익신장을 위한 최근의 발전	62
가. 석방절차 개선	
나. 접견예약제도 신설	
다. 수용자 손목시계 사용 허가	
라. 수용자 외출·외박제 도입 시행	
마. 계구사용의 엄격화	
바. 미결수용자 사복착용	
사. 민영교도소 도입근거 마련	
아. 교정처우의 지속적 개선	

機能

矯正行政은 刑이 확정된 受刑者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刑事被告人 및 被疑者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隔離 機能

刑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受刑者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즉, 범죄행위로 懲役刑, 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한다. 그리고 격리된 수용자의 효율적인 처우를 위해 과학적인 분류심사에 의거, 그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이들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같은 절차에 따라 엄격한 격리수용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행정 기능이 적용하게 된다.

2. 矯正教化 機能

우리의 교정행정은 현대 行刑의 지도이념인 教育刑主義를 배경으로, 범죄인의 인간성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목표로 이들의 그릇된 심성을 순화하고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 그리고 심신을 단련하여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3. 未決收容 機能

교정행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刑事被告人 및 被疑者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미결수용자들의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구치소를 설치하거나 교도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刑이 확정된 受刑者와 未決收容者를 엄격하게 분리수용함으로써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들의 인권보호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1. 概要

三國遺事나 중국의 三國志 魏志 東夷傳 古朝鮮條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行刑史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유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조선의 八條法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미 贖錢制度를 시행할 만큼 진보적인 형벌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夫餘國에서는 圓形獄이라는 별도의 구금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迎鼓라는 제천행사 때에는 죄수들을 釋放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죄수 特赦制度는 삼국에서도 시행되었다. 백제에서는 중앙행정관서 중에 朝廷佐平이라는 관직을 두어 刑獄과 刑律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신라에서도 左·右理方府라는 형률담당 관서를 두고 있었다.

한편 고려 태조는 開京에 범법자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典獄署를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高麗刑法을 제정하여 五刑制度(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를 확립하였으며, 死囚三覆制, 三員訊囚制, 罪囚休暇制 등 인본주의적 형사제도를 시행하였다.

조선에서는 고려의 五刑制度를 계승하였으나 각종 법령을 편찬·정비하여 法治國家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따라서 형벌에서도 死刑보다는 徒刑이나 流刑 등 自由刑이 확대되고 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을 성문화하여 濫刑 방지에 힘썼다.

1894년 甲午更張을 맞아 국정전반을 개혁하면서 행정제도도 근대적 체제로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에게 강점 당한 후에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러한 가운데 시설의 명칭도 監獄署에서 監獄으로, 1923년에는 刑務所로 다시 바꾸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美軍政 통치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 行刑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61년 동 법을 1차 개정하면서 刑務所를



笞刑은 가벼운 罪를 범한 罪人에게 羞恥心을 갖게 하기 위해 집행한 傳統 刑罰임



1970년대 職業訓練 修了式



1990년대 收容者 컴퓨터 教育

矯導所로 다시 바꾸고 1999년 12월 7차 개정에 이르면서 수용자 사회복귀 기능을 강화하는 민주 교정행정체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2. 機構의 變遷

가. 中央機構

1948. 7. 17. 대한민국 憲法이 제정·공포되고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1월 4일에 대통령령 제21호로 法務部職制가 공포·시행되었다.

동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는 1실 4국 21개과로 발족하였으며 그중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刑政局은 감사과, 형무과, 작업과, 보호과, 교육과 및 후생과의 6개과로 조직되었다. 그 후 17차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현행 교정행정 중앙기구인 1국 1심의관 6개과로 개편되었다.

나. 地方矯正廳

矯正行政의 중앙기구인 法務部 矯政局에서 일선 교정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과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여 1991. 9. 3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3483호)를 개정, 4개 지방교정청이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일 개청을 보게 되었다.

지방교정청은 서울(중부지방), 大邱(영남지방), 大田(충청지방), 光州(호남지방)등 4개 지역에 설치되어 관할구역내 일선 교정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중간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矯正機關

(1) 矯導所

조선말엽 갑오경장 이전까지 전국의 府郡縣 단위(350여개의 행정구역)에 존재 하였던 우리나라 전통 圓形獄은 1908. 4. 11. (法部令 제2호, 監獄官制: 勅令 제52호) 일제에 의해 전국 8개 監獄으로 통합되었으며, 1908. 11. 20. 法部令 제19호로 8개의 分監이 설치되면서 교정시설(監獄)은 대형화 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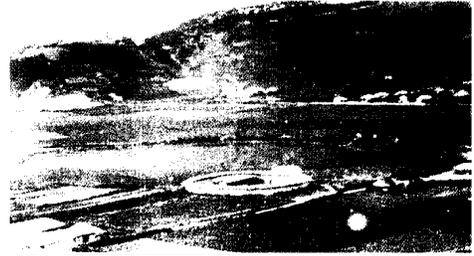
1923. 5. 5. 總督府令 제72호로 監獄을 刑務所로, 分監을 支所로 각각 개칭하여 전국(남북포함)에 형무소 15개소, 소년형무소 1개소, 지소 13개소 등 29개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1945. 8. 15.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독립이 되었으나 전국의 28개 시설 중 북한지역에 설치된 10개소(6개 형무소, 4개지소)는 접수하지 못하고 남한지역의 11개 형무소와 7개 지소를 본소로 승격시켜 총 18개소를 관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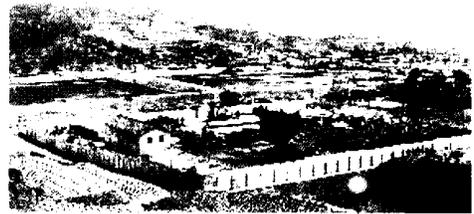
정부수립후 1950. 3. 18. 刑務所職制(대통령령 제289호) 제정 당시에는 총 20개의 형무소와 1개의 지소가 있었으나 그동안 범죄의 증가 및 교정처우 개선에 따른 시설의 증가로 1999. 12. 31. 현재 교도소는 총 31개로서 그중에는 개방교도소 1개소, 여자교도소 1개소 및 소년교도소 2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외 지소가 1개소 포함되어 있다.

(2) 拘置所

구치소는 裁判中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구금수용하는 시설이므로 刑이 確定된 수형자를 수용처우하는 교도소와는 그 기능이 다른바, 1967. 7. 7. 대통령령 제3140호로 서울구치소가 처음 설치되었고, 이어서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부산구치소, 천안구치지소, 인천구치소, 울산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 논산구치지소 및 대구구치소 등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1999년 12월 현재 모두 8개의 구치소와 3개의 구치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水原拘置所('96. 6. 29. 개칭), 仁川拘置所('97. 10. 5. 신축이전)와 대구구치소('99. 3. 28. 개칭)는 법원·검찰청과의 거리 및 도시환경 미관 등을 고려한 초현대식 고층 빌딩형식의 구치시설이다.



1914年 以前 傳統 矯正施設 圓形獄(公州獄)



1950年代 矯正施設(公州刑務所)



1980年代 矯正施設(群山矯導所)



현대식 都心 高層拘置所(水原拘置所)

(3) 保護監護所

社會保護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보호감호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1981. 10. 2. 대통령령 제10476호로 청송제1·2·3 보호감호소를 설립하였으며, 1983. 3. 9. 대통령령 제11066호로 청송제1보호감호소를 청송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청송제3보호감호소를 청송제2보호감호소로 각각 개편하였다.

3. 法令整備

가. 行刑法의 制定

1945. 8. 15. 해방 후 美軍政下에서는 1912년 제정된 朝鮮監獄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軍政法令 제172호로 “優良受刑者釋放令” 등 서구 선진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 시행하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0. 3. 2. 법률 제105호로 教育刑理念에 입각한 전문 14장 67조 및 부칙으로 된 行形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나. 行刑法의 改正

시대의 변천에 따라 行刑法도 수용자의 처우향상 및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그 내용이 개정되어 왔다. 그동안 개정한 골자를 살펴보면,

(1) 제1차 改正

1961년 5·16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行刑法도 1961. 12. 23. 법률 제858호로 전면적인 개정을 보게 되었다.

1차 改正의 특징으로는 刑務所, 刑務官이라는 용어를 矯導所, 矯導官으로 바꿈으로써 行刑의 방향이 교육형주의로 전환되었음을 명백히 하였고, 수형자 이송제도, 歸休制度, 작업상여금제도, 宗教敎誨制度 등이 신설되었다.

(2) 제2차 改正

1962. 12. 24. 법률 제1222호로 行刑法이 개정되어 接見과 書信受發을 소장이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3) 제3차 改正

1973. 1. 15. 법률 제2437호로 政府組織法이 改正되어 동법 부칙 ㉔항에서 行刑法중 제2조제1항(矯導所設置)은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行刑法에 규정되어 있던 교도소 설치근거 규정 제2조 제1항이 폐지되었고, 교도소 설치에 정부조직법에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4) 제4차 改正

1980. 12. 22. 법률 제3289호로 行刑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① 무기사용 근거규정을 보완하여 矯導官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분류처우제도의 근거규정 명시.
- ③ 심신단련을 위한 교정교육 및 훈련 근거규정 신설.
- ④ 징벌종류에 감식을 도입.

(5) 제5차 改正

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行刑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① 미결수용자의 辯護人 接見時 立會禁止 규정 명시.
- ②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형자 준용규정 정비.
- ③ 접견·서신제한의 대폭 완화.
- ④ 미결수용자의 自弁規定 정비.
- ⑤ 減食罰 등 부적합한 懲罰의 削除 및 戒具 관련규정 整備.
- ⑥ 개방처우와 외부통근작업의 근거규정 신설.

(6) 제6차 改正

1996. 12. 12. 법률 제5175호로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종전까지 각 교정시설마다 설치되어 있던 假釋放審査委員會를 법무부장관 밑에 설치하여 가석방적격 여부를 일괄심사하게 함으로써 審査의 公明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7) 제7차 改正

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行刑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① 수용자에 대한 인간존엄성을 천명하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선언함.
- ② 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 ③ 청원제도를 보완하여 수용자 권리구제절차 및 수용자 처우의 공정성을 도모함.
- ④ 교도소등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일과시간, 규율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 ⑤ 계구사용 요건을 강화하고, 징벌의 수단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⑥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의 유지를 위해 강제력 행사 가능.
- ⑦ 접견에 대한 교도관 참여 및 서신에 대한 검열을 필요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검열을 금지함.
- ⑧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규정 신설.
- ⑨ 집필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 ⑩ 외부통학 및 출장직업훈련의 근거규정 신설.
- ⑪ 귀휴의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모사망, 자녀혼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⑫ 징벌의 요건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벌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징벌제도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함.
- ⑬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징벌의 공정성을 제고.

4. 施設의 改善

해방 후 우리나라의 行刑施設은 대부분 日帝時代의 형무소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노후시설로서 격리와 구금작용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시설에 불과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하였으나, 오히려 1950년 6·25사변으로 기존 교도소 시설조차 약 70%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1955년에 시설복구를 위한 矯導所復興委員會가 신설되었으나 戰後 예산사정 등으로 안양, 수원, 순천교도소를 설립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1967. 3. 30. 司法施設등造成法과 司法施設등特別會計法의 제정·시행으로 司法施設(法院, 法務部, 檢察)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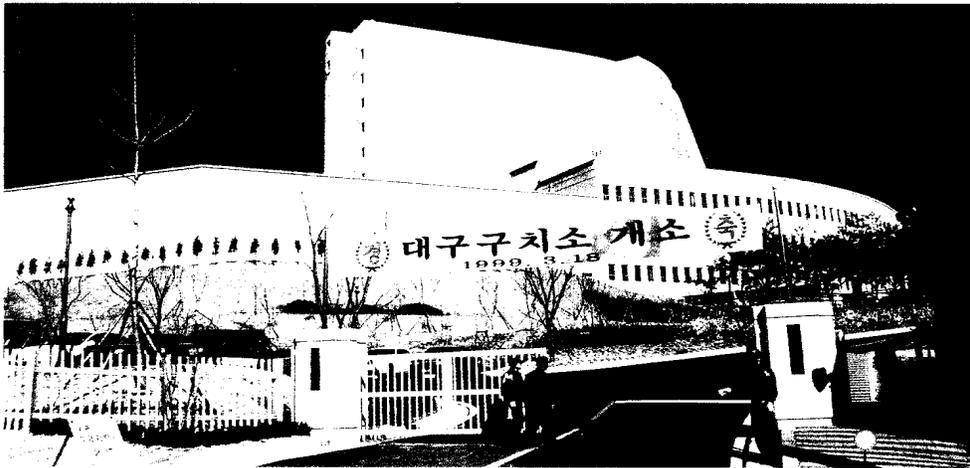
면서 교정시설의 현대화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초창기의 司法施設등特別會計 歲入은 罰料金 및 沒收金の 30%중 2/3에 해당하는 재원만이 당부 司法會計豫算으로 편성되어, 교정시설 현대화에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4회에 걸친 司法施設등特別會計法의 개정으로 예산의 점진적 증액과 당부 재산매각세입이 증대함에 따라 1997. 10월 인천구치소를 끝으로 총 40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을 완료하였다.

특히 1980년도부터 교정시설은 收容居室의 片複道 配置, 수세식 화장실 및 세면대의 설치,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공장시설과 교육시설의 조성등으로 수용자의 처우 및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988. 11. 30.에는 국내 최초로 天安에 開放矯導所가 개청되었고, 1988. 11. 27. 신축 이전한 군산교도소에도 호남지역의 초범수용자 100명정도를 집결수용할 수 있는 개방시설이 부설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도 開放處遇의 확대시행을 위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자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수용처우와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1989년 10월에 淸州女子矯導所를 신설하였고, 合議支廳 所在地에 구치시설을 연차 신설할 계획으로 1989. 10. 16.에는 天安拘置支所, 1996. 9. 1.에는 平澤拘置支所, 그리고 1997. 8. 13.에는 論山拘置支所를 각각 개청하였다.

또한, 1990. 11. 8.에는 인천소년교도소 자리에 인천구치소를 신설하고, 1994. 2. 5.에는 울산구치소를, 1996. 6. 29.에는 수원구치소를, 1999. 3. 18. 대구구치소를 각각 신설하여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경찰서의 대응감방 해소에 기여하였다.



大邱拘置所

그동안 司法施設等特別會計 및 國有財産特別會計에 의해 조성된 교정시설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機關新設 : 19개소

- 영등포, 성동, 울산, 수원구치소 및 평택·논산구치지소, 대구구치소
- 홍성, 경주, 장흥, 제주, 강릉, 청송, 수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송제1, 2 보호감호소, 천안개방교도소, 청송제2교도소

(2) 新築移轉 : 17개소

- 서울, 인천 및 부산구치소
- 마산, 대구, 대전, 전주, 광주, 안동, 청주, 공주, 춘천, 김천, 군산, 진주, 목포, 천안소년교도소

(3) 施設擴張 : 15개소

- 영등포 및 성동구치소
- 김천, 인천, 의정부, 진주, 안양, 수원, 목포, 순천, 마산, 전주, 공주, 제주, 청송교도소

(4) 신축중인 시설

- 서산구치지소(2001년 10월 준공예정)

5. 處遇制度의 發展

1894년 甲午更張 이전의 범죄자 처우는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般豫防的·應報的 경향의 처우가 지배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에 점차 근대적 의미의 범죄자 처우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1894년 11월 監獄規則 및 懲役表가 제정됨으로써 근대적 自由刑 執行의 지침이 마련되는데 이어 1898년 監獄細則의 제정으로 作業·書信·接見·給與 등 수용자 처우의 기준이 정하여졌다.

日帝治下에서는 일본 감옥법을 의용하게 한 朝鮮監獄令을 제정하여 민족차별을

노골화 하였는데 1912년 조선태형령 제정이 그 사례이다. 또한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예방구금령을 제정하여 독립지사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고려하지 않았다.

1937년 11월에 이르러 朝鮮 行刑累進處遇規則이 제정·공포되어 각 급별마다 책임점수를 부과하고, 그 책임점수에 달하면 上級으로 진급시키고 처우를 다소 완화하였다.

해방이후 美軍政時에 구미 선진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고 정부수립후인 1950. 3. 5.에 민주적 教育行刑을 위한 行刑法(법률 제105호)을 제정하여 나체검신의 폐지, 급양, 보건, 위생, 교육, 작업, 접견, 서신 등 기본적 처우를 UN에서 권장한 被拘禁者處遇最低準則 이상으로 대폭 개선하였으며, 1969년에 分類審査와 行狀審査를 一元化한 矯正累進處遇規程을 제정함으로써 민주행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99년 5월 다섯차례에 걸친 受刑者分類處遇規則 개정으로 단계적 분류수용과 함께 누진계급에 걸맞는 처우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현대의 교정처우는 受刑者의 人格을 改善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 프로그램으로서 종교인 및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확대, 教化委員制度의 활성화, 歸休制度의 활용,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공중전화 사용, 부부만남의집 설치, 거실내 TV설치 등 개방처우 확대로 矯正의 社會化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외국어·컴퓨터 전문교육 등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심성순화 및 생활자립 능력 습득에 역점을 두어 입체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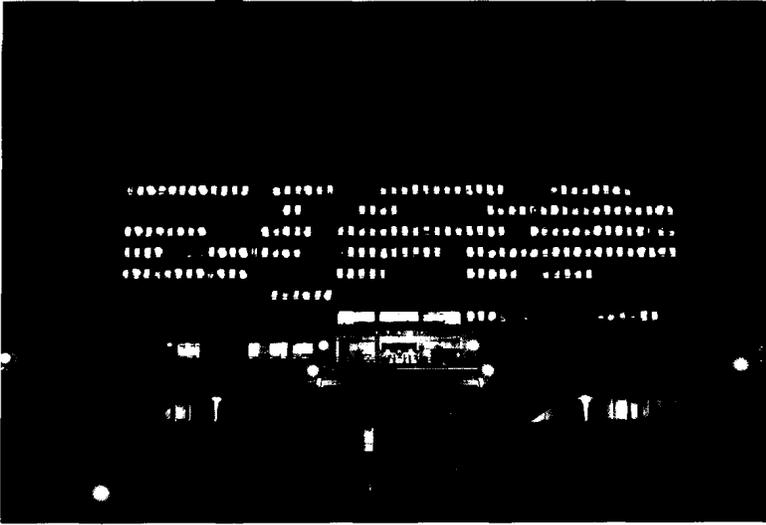


受刑者 居室

組 織

1. 機 構

가. 中央機構



法務部 夜景

矯正行政을 총괄하는 中央機構로는 法務部長官과 次官 밑에 矯政局長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矯政審議官이 있으며, 그 밑에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矯政課, 保安第1課, 保安第2課, 作業指導課, 敎化課, 管理課의 6개과를 두고 있다. 국장은 교정이사관으로 보하며 교정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교정과장, 보안제1과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안제2과장은 교정감(4급)으로, 작업지도과장, 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교정감 또는 서기관(4급)으로 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나. 地方矯正廳

本部 矯政局과 一線矯正機關의 중간에 위치하여 일선기관 업무집행의 指揮監督을 관장하는 中間監督機關으로서 1991년 11월부터 서울, 大邱, 大田, 光州 등 4개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교정청은 설치 당시에는 廳長을 정점으로 管理局 밑에 총무과, 보안과, 의료분류과를, 그리고 敎化局 밑에는 작업과, 교무과 등 2국 5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 2. 28. 法務部와 그所屬機關職制(대통령령 15711호)의 개정으로 2개 局이 폐지되고 청장밑에 직접 5개課를 두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地方矯正廳長은 교정이사관(2급)으로, 과장의 경우 總務課長, 保安課長 및 作業課長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며, 敎務課長은 교회관(5급)으로, 醫療分類課長은 교정관으로 각각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矯正機關

矯正行政의 일선기관으로는 전국에 모두 44개 교정시설이 있으며 교도소, 소년 교도소, 구치소, 여자교도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의 내부조직은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矯導所(소년, 여자교도소 포함)

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行刑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을 정점으로(대규모 교도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둬) 庶務課, 保安課, 分類審査課, 作業課, 教務課, 用度課, 醫務課를 두고 있다.

대규모 교도소의 所長은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보하고, 소규모 교도소의 所長과 대규모 교도소의 副所長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 및 교감(6급)으로 보하고 있다.

다만 醫務課長은 그 업무의 성질상 醫師로, 教務課長은 교정부이사관(3급), 교회감(4급) 또는 교회관(5급)으로, 分類審査課長은 분류감(4급) 또는 분류관(5급)으로 보하고 있다.

(2) 拘置所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교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所長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副所長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고, 의무과장 교무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仁川拘置所

(3) 開放矯導所



天安開放矯導所

개방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模範受刑者를 집결하여 受刑者自治制를 허용하고 아울러 외부기업체 취업 등 외부통근제도를 실시하여 출소전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조직은 서무과, 지도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다른 교도소와 같다. 다만, 다른 교도소의 保安課 기능을 指導課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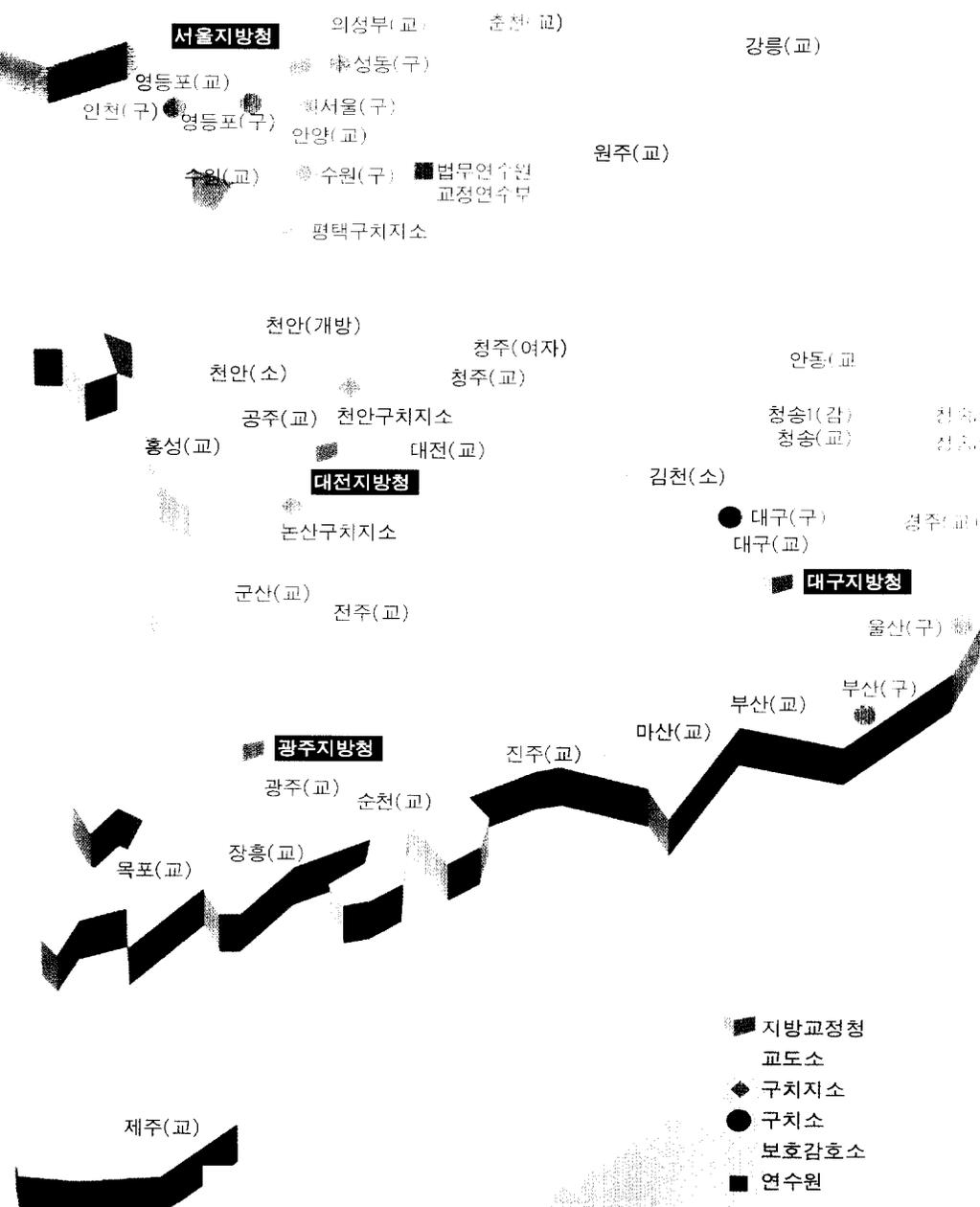
(4) 保護監護所

보호감호소는 社會保護法(법률 3286호, '80. 12. 18.)에 의거,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收容·保護 및 社會復歸 處遇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있으며,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光州 保護監護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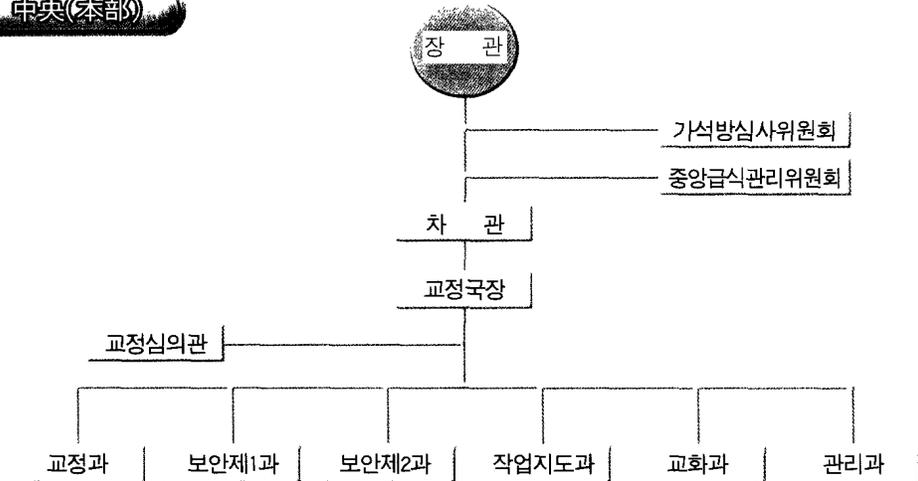
전국 교정기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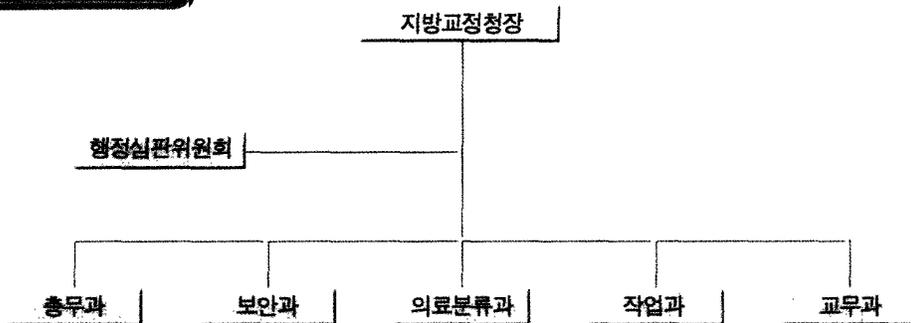
- 지방교정청
- 교도소
- ◆ 구치지소
- 구치소
- 보호감호소
- 연수원

矯正機關 機構表

中央(本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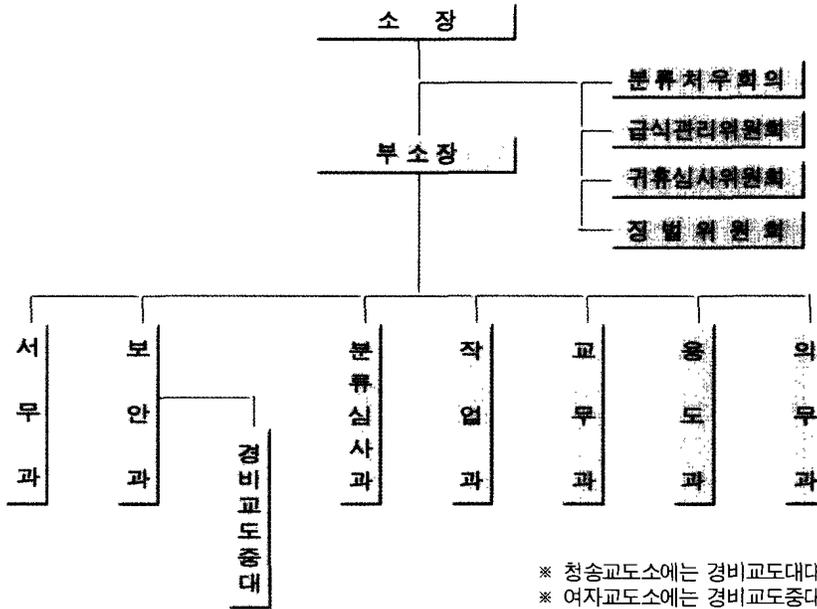


地方矯正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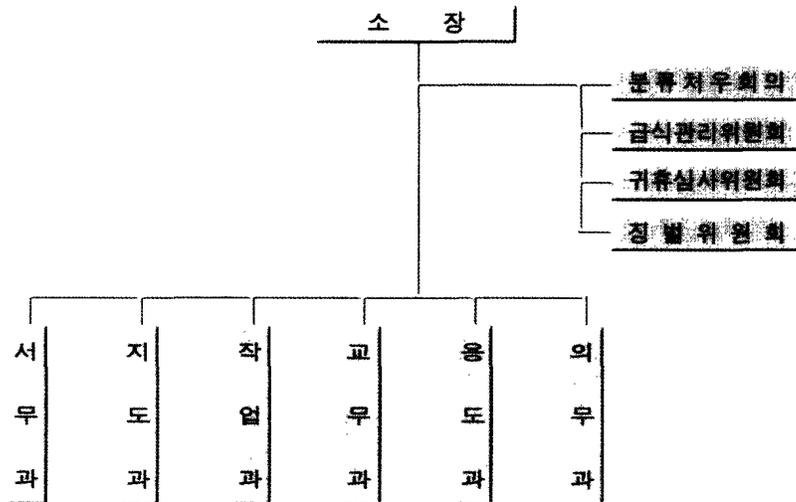


一線 矯正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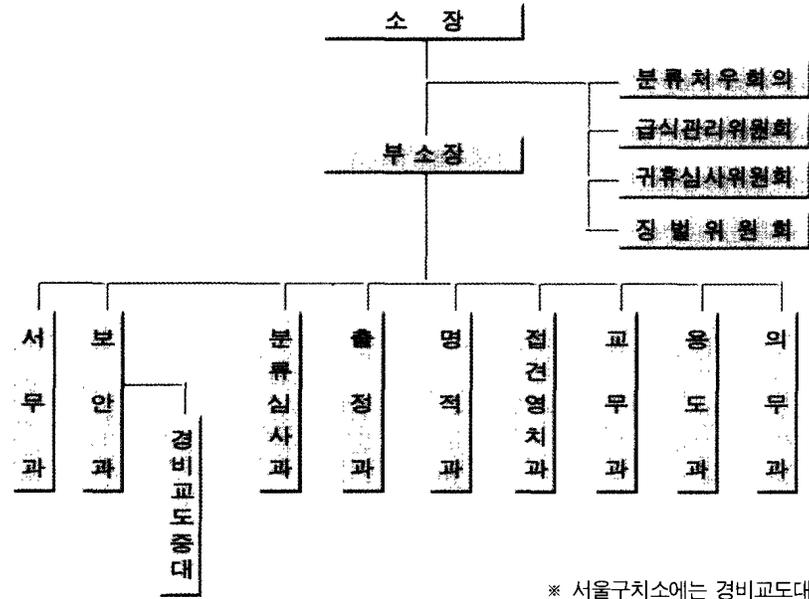
矯導所(소년·여자교도소 포함)



天安開放矯導所(소규모 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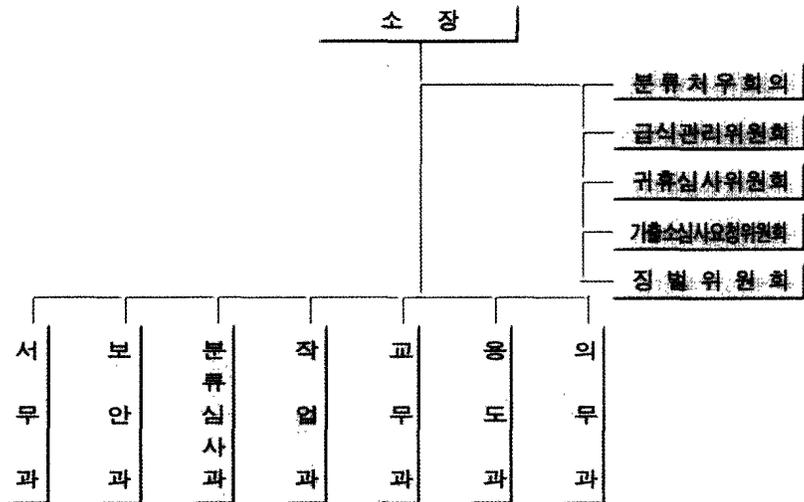


拘置所



* 서울구치소에는 경비교도대대가 있음.

保護監護所



2. 事務分掌

가. 矯政局

(1) 矯政審議官

- 교정행정, 수용자의 수용 및 교화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

(2) 矯政課

-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 교정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 교도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



法務部 矯政局 幹部會議

(3) 保安第1課

- 수용자의 수용, 처우, 청원, 석방, 규율, 계호 및 보안
- 교도소 등에 대한 시찰 및 참관
- 교도소 등의 경비, 비상훈련, 무기 및 탄약관리

(4) 保安第2課

- 공안(관련)사범의 수용, 처우, 청원, 석방, 규율, 계호 및 보안
- 공안(관련)사범의 교육 및 교화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조직 및 정원관리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복무, 후생 및 교육훈련

(5) 作業指導課

-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 결산
-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
-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 교도작업 생산 제품의 홍보 및 판촉

(6) 教化課

-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
- 수용자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기능공 양성 및 검정고시 지도

(7) 管理課

- 교정행정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교정시설의 조성과 장비의 수급 및 유지보수
- 교정공무원·경비교도 및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의 관리
- 수용자의 보건, 의료 및 영치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나. 地方矯正廳

(1) 總務課

- 소속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
- 지방교정청 관할 예산, 회계 및 결산
- 교정공무원, 경비교도 및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
- 관할 교도소 등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

(2) 保安課

- 소속공무원의 규율, 점검 및 훈련
- 수용자의 수용, 계호, 이송, 석방 및 보안
- 교정시설 경비교도의 배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보안장비 및 방호

(3) 醫療分類課

- 수용자의 분류처우, 적성판정 지도
- 수용자의 보건, 위생, 약제 및 순회 진료반의 운영



大田地方矯正廳

(4) 作業課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 용도 및 결산
-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 지도 및 관리
-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 승인
- 수용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 教務課

-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
- 수용자의 서신, 도서, 귀휴, 사회참관, 학력인정 및 자격시험
- 출소자 보호 및 교정상담실 운영

다. 一線矯正機關

(1) 矯導所

① 庶務課

- 인사, 官印의 管守, 문서의 접수, 발송, 편찬 및 보존
- 통계, 수용, 석방, 영치, 감식, 예산, 결산 및 금전의 출납
- 기타 소내의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民願奉仕室

② 保安課

- 직원의 훈련, 점검 및 규율
- 수용자의 구금, 계호, 상벌, 접견 및 출정
- 자체방호 및 무기·탄약관리

③ 分類審査課

- 수용자의 자질감별, 分類, 作業의 적성판정
- 행장심사, 누진처우 및 가석방

④ 作業課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물품수급, 작업경영 및 직업훈련
- 작업상여금의 계산 및 작업통계

⑤ 教務課

- 수용자의 교화·교육 및 생활지도
- 서신·귀휴 및 석방자의 보호

⑥ 用度課

- 물품의 출납, 용도, 건축, 영선 및 국유재산관리
- 수용자에 대한 물품급여

⑦ 醫務課

- 수용자의 보건, 위생 및 약제
- 소내 각종 의료업무 수행

(2) 拘置所

구치소에는 서무과, 보안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외에 교도소와는 다른 특성상 다음과 같은 과를 두고 있다.

① 出廷課

- 수용자의 출정 통지 및 재판시 계호

② 名籍課

- 수용, 석방, 신분장 관리, 감식,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이송, 통계, 작업 및 자질감별

③ 接見領置課

- 접견, 영치금품의 검사, 보관, 출납 및 자비부담 금품

3. 各種 委員會

가. 中央委員會(法務部)

(1) 假釋放審査委員會

行刑法 제6차 개정(법률 제5175호, '96. 12. 12.)에 의거, 종전에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었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法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刑法 제72조에 의한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假釋放審査委員會

(2) 中央給食管理委員會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收容者給食管理委員會規則(법무부령 제482호, '99. 6. 8. 제정)에 의거, 수용자에게 급여할 부식의 食群과 수량 및 급식기준과 열량을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次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정국장과 보호국장 등 當然職 委員이외에, 영양 및 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6명을 委員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地方矯正廳

(1) 行政審判委員會

傘下 矯正機關의 행정처분에 대한 行政審判請求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교수, 前職 4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一線矯正機關

(1) 分類處遇會議

受刑者分類處遇規則(법무부령 제480호, 1999. 5. 20. 개정) 제83조에 의거, 수형자의 分類審査, 級別判定, 累進點數의 算定 및 進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설치하고 매월 10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所長이 의장이 되고 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임명하는 7급이상의 교도관 등 도합 7인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地方給食管理委員會

收容者 主·副食의 품종선택, 수량 및 함유영양량 등에 관하여 일선 교정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 소속하에 地方給食管理委員會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당해 所長이 되고, 所屬 課長, 辯護士 및 영양과 조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委員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3) 歸休審査委員會

行刑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형자 歸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귀휴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所長이 되고 委員은 부소장 및 과장중 소장이 임명하는 자와 교정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懲罰委員會

行刑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 징벌을 과하기 위하여 교도소 등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해 所長이 되고 위원은 당해 所의 副所長과 課長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矯正行政 職員

1. 定 員

1999. 12. 30. 현재 전국 교정공무원 정원은 12,352명에 이르며, 이는 矯正職 10,957명, 一般職 606명, 醫療職 133명, 別定職 91명 및 技能職 5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2. 12. 2. 公務員任用令중 改正令(대통령령 13,767호)에 의거, 종전에 별정직으로 보하였던 교회·분류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반직의 수가 대폭 증가되었다.

級別	職群	計	矯正職	一般職	醫療職	別定職	技能職
2	급	6	6				
3	급	22	17	1	4		
4	급	130	68	16	46		
5	급	280	191	63	17	9	
6	급	944	626	268	13	37	
7	급	1,632	1,322	243	22	45	
8	급	4,280	4,241	8	31		
9	급	4,493	4,486	7			
	기능직	565					565
	계	12,352	10,957	606	133	91	565

2. 任 用

교정공무원의 임용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矯導(9급)는 공무원임용령 및 시험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고, 矯査(8급)는 공개경쟁



矯尉 任官式



法務部長官 表彰

승진시험 또는 근무성적 등에 의한 승진심사 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矯尉(7급)는 시험과 심사에 의한 승진을 병행하고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한 신규채용도 하고 있다.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넓히하고자 1994년 2월부터 矯査(8급), 矯尉(7급)에의 승진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달하면 승진시험이나 직제상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시킬 수 있는 勤續昇進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矯監(6급)은 승진시험 또는 근무성적 등에 의한 승진심사방법에 의하여 승진하고, 矯正官(5급)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성질상 일반승진 시험과 교정분야 行政高等考試에 의하고 있으며, 4급 이상(즉, 矯正監, 矯正副理事官 및 矯正理事官)의 승진은 근무성적 등에 의한 승진심사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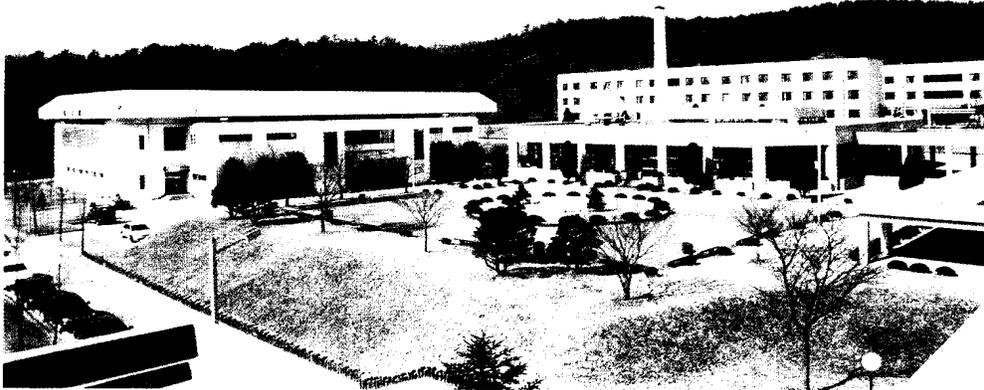
한편,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정사고 방지 및 교정행정발전 등에 功績이 있는 7급이하 교정공무원에게는 特別昇進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教育訓練

교정공무원은 범죄자의 격리·교정교화라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매한 인격의 도야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一般教育訓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 法務研修院 教育

법무연수원은 전문적인 법무교육기관으로서 직무분야 및 직급에 상응하는 교



法務研修院 矯正研修部

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基本教育, 專門教育, 特別教育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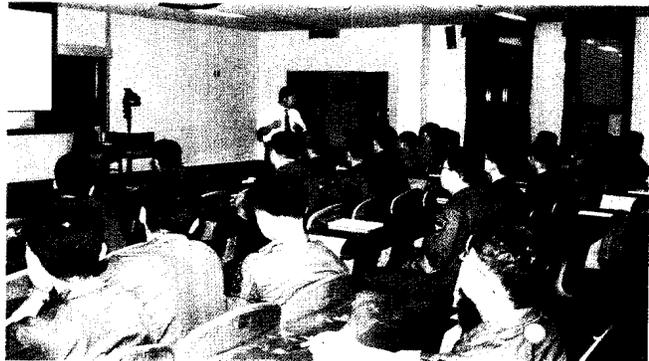
(1) 基本教育

① 7級 昇進者 課程

7급 승진자 및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초급 교정간부로서의 자질 및 전문지식 배양, 투철한 국가관 및 公職倫理觀 정립,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新規者 課程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게 초급 교정간부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배양, 자질향상 및 업무처리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급 신규채용자에게는 투철한 국가관 및 공직윤리관 정립,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기초지식 및 자질배양, 收容者 處遇技法 및 現場勤務能力 培養 등을 목적으로 6주간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新規 職員 學科教育

(2) 專門教育

① 共通專門教育 課程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통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목적으로 보안실무 6·7급반 등 7개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1주일이다.

② 選擇專門 教育課程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교정관리자반 등 16개반이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인터넷 등 첨단정보매체를 이용한 Cyber교육도 편성되어 있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다. 교육기간은 1주에서 4주까지 다양하다.



職員 外國語 教育

③ 外國語 教育課程

외국인 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 교정관련 국제업무 처리능력배양 및 세계화에 대비한 矯正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英語·日語會話班 教育을 5주간(일어는 4주) 실시하고 있다.

④ 電算教育課程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기초지식과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과학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2주간 실시하고 있다.

(3) 特別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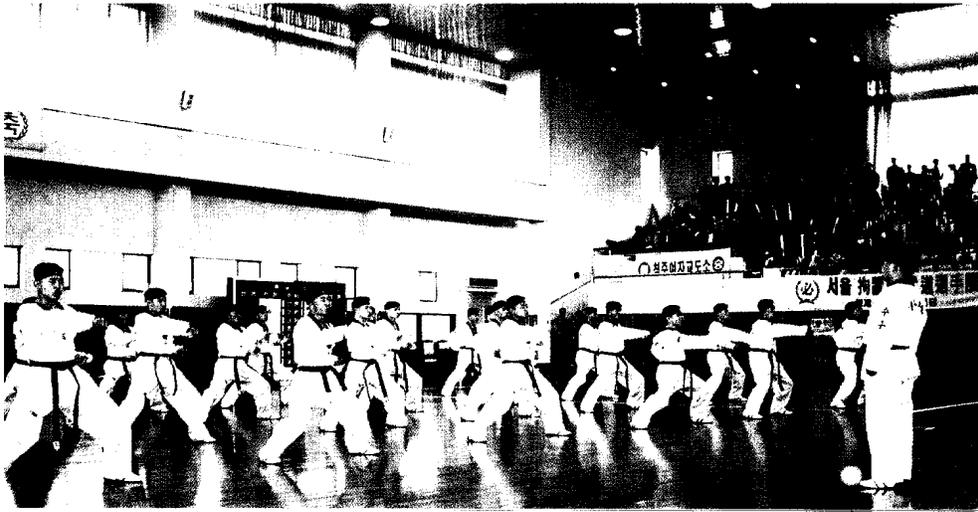
國防部에서 전임된 新任 警備矯導를 대상으로 투철한 국가관 및 복무기강확립, 교정시설 방호능력 함양 및 수용자 간접계호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3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委託教育

교정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이 외에 矯正行政關聯 專門課程이 설치되어 있는 國內 大學院의 碩士課程에 입학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교정제도와 처우기법 등을 연구시키기 위하여 美國, 日本, 濠洲 등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견문이 넓은 유능한 교정공무원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부설 어학연구소 및 외국어전문학원에 위탁하여 어학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다. 自體教育

行刑法, 刑事訴訟法, 犯罪心理學, 矯正實務 등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과목을 자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훈련 등 필요한 기술과 실기훈련도 연마하도록 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職員 武道訓練

豫 算

矯正行政의 豫算은 一般會計, 矯導作業特別會計 및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로 구성되어 있으며, 一般會計 豫算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收容者의 수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리고 矯導作業特別會計 豫算은 교도작업에 의한 일체의 收入과 轉入金, 借入金을 그 세입으로 하고 교도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다.

國有財産特別會計 豫算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산으로서 法院施設 또는 法務部 所屬機關施設 설치에 필요한 경비운용을 위하여 사법시설계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교도소, 소년원, 검찰청의 시설 신축비 등이 동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여기에 계상된 교정행정 예산을 모두 합하면 '99년도 법무부 전체 예산의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99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999년 豫算內譯		'98 대비	
		1998	1999	증감액	비율(%)
총 계		942,813	952,687	9,874	1.0
일 반 회 계		805,309	811,063	5,754	0.7
교 정 행 정		407,905	411,238	3,333	0.8
기 타 법무행정		397,404	399,825	2,421	0.6
교도작업 특별회계		36,000	36,000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1,504	105,624	4,120	4.1
교 정		27,759	23,734	△4,025	△14.5
기 타 법무시설		73,745	81,890	8,145	11.0

收容者 處遇

1. 收 容

가. 收容人員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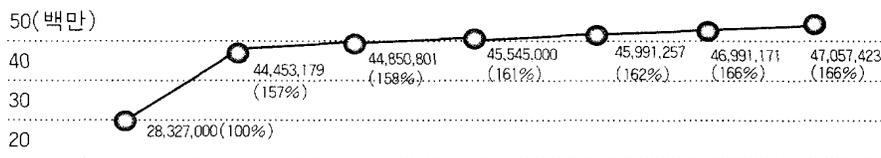
(1) 1日 平均 收容人員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보면 1945년도 전국의 1일평균 수용인원이 16,626명이던 것이 1967년도에는 59,379명으로 최다 수용인원을 기록한 이후 소폭의 감소 또는 증가현상을 보여오다가 '97년말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98. 12. 7. 總 收容人員 74,377명으로 최다수용인원을 기록하였으며, '99년에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99년 12월 현재 수용정원 58,000명에 수용인원 68,000여명으로 아직도 과밀 수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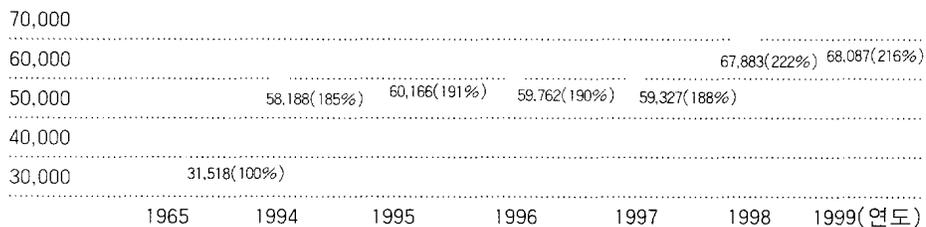
연도별	수용인원	수 용 내 역				평당 수용인원
		수형자	피의자	피고인	노역	
1994	58,188	33,207	2,893	21,546	542	2.0
1995	60,166	32,895	3,158	23,627	486	2.1
1996	59,762	32,848	3,272	23,247	395	1.9
1997	59,327	33,123	2,253	23,572	379	2.1
1998	67,883	35,125	2,930	28,308	1,520	2.2
1999	64,641	36,947	1,806	24,098	1,790	2.1

(2) 人口對比 收容人員

총인구



수용자(비율)



(3) 矯正職員對 收容人員

교정직원과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까지는 교정직원의 증가율이 수용인원의 증가율에 훨씬 못미쳐 교정직원 1인이 부담하는 수용자가 약 10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으나 그후 교정직원이 꾸준히 증원되어 1999. 6. 30. 현재 교정직원(12,352명) 對 수용자(69,102명)의 비율은 1:5.6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日本의 1:3.1, 美國의 1:3.3, 英國의 1:1.5, 캐나다의 1:1.3(이상 '99. 6. 30.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수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 비율은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나. 分類收容

교정시설내의 수용은 수용자 상호간의 惡性感染防止와 個別處遇에 적합하도록 수용자의 형기, 죄질, 범수, 성별, 연령 및 경력 등을 참작하여 거실과 작업장을 분리수용하고, 大分類制度(例規 보안일 제386호, '94. 4. 7)에 의거 초범자 수용소, 2범 및 3범이상 수용소로 구분하고 있으며, 特殊機能矯導所로서 결핵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진주교도소에, 나병환자는 순천교도소에, 소년수형자는 천안 및 김천소년교도소에,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 그리고 특정강력범 중 문제수형자 등은 청송제2교도소에 각각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천안개방·마산·군산·청주여자교도소는 가석방예정자 사회적응훈련전담소로, 수원교도소는 과실범전담교도소로, 영등포·청주·순천교도소등은 職業訓練專擔 矯導所로 각각 운용되고 있다.

2. 給 與

재소자 수용생활의 기본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行刑法 제20조에 의거 의류, 침구 및 식기류와 일상용품 등을 지급하고 同法 제21조에 의하여 체질, 건강, 연령,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식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中央給食管理委員會, 각 교정기관에 地方給食管理委員會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 給食基準

수용자의 主·副食은 1일 3회 給여하며 연장작업의 경우는 중간식을 給여한다. 주·부식의 給與熱量은 사단법인 韓國營養學會에서 발표한 '95년도 한국인 권장 열량 2,500Kcal를 참작하여 給食하고 있으며, 작업장려 또는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副食을 給여한다.

구 분	성분별	
	20세 이상	20세 미만자
총 단백질	45g	48g
동물성 단백질	25g	30g
지방	22g	28g
열량	450Kcal	500Kcal
칼슘	400mg	600mg
비타민 A	700R.E	700R.E
비타민 B1	0.5mg	0.5mg
비타민 B2	1.0mg	1.0mg
비타민 C	55mg	60mg

1일 1인당 기준단가	비 고
2,210 원	※ 주·부식·연료 통합편성 ※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1인당 1일 1,100원이 가산됨

나. 衣類 등 日常用品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 치솔, 치약, 운동화, 휴지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給여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부담 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

3. 醫療 및 保健

가. 疾病의 早期發見 및 診療



收容者 健康診斷

1999년 12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醫師·藥師·看護士 및 醫療技術職 등 총 143명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재소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철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시는 물론 수용기간중에도 성인은 연 2회, 미성년자 및 독거구금자는 3개월마다 1회 등 정기적으로 健康診斷을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정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 特殊患者 및 危急患者 診療

사회의 일반의료시설과 비교해 볼 때, 교정시설내 의무과는 각 분야별 전문의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의료장비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특수질환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태에 처할 경우에는 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병원 (현재 225개의 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음)으로 이송,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 수용자에게 연 1회이상 X-Ray 검진을 실시하고 罹患된 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가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 및 정신질환자는 별도로 설치된 의료교정시설에 집결수용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다. 衛生管理

矯導所는 다수인원이 수용된 集團社會이므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건물은 통풍, 채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수용자의 신체, 의류, 거실 및 기타 생활환경의 청결과 이발, 예방접종 등 철저한 防疫措置 및 衛生管理로써 수용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절기 거실내 선풍기 설치 및 동절기 사동내 난방시설을 가설하고 종래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쾌적한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外部交通

收容者の外部와의交通은 주로 書信과 接見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제5차 行刑法 改正에 의거(1995. 1. 5. 법률 제4936호) 친족이외의 자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대폭완화하였으며(行刑法 제18조제2항), 書信은 발송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다.

가. 接 見

未決收容者の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99. 5. 20 개정된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에 의거 접견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누진계급 4級은 月4회, 3級은 月5회, 2級은 月6회로 하고 1級은 수시로 접견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소장재량으로 허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보장에 충실을 기하였다(行刑法 제66조). 한편 면회자의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도 평일과 같이 접견을 실시하고 거주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접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화나 FAX로 사전에 접견을 신청하고 예약된 일시에 즉시 면회가 가능한 접견예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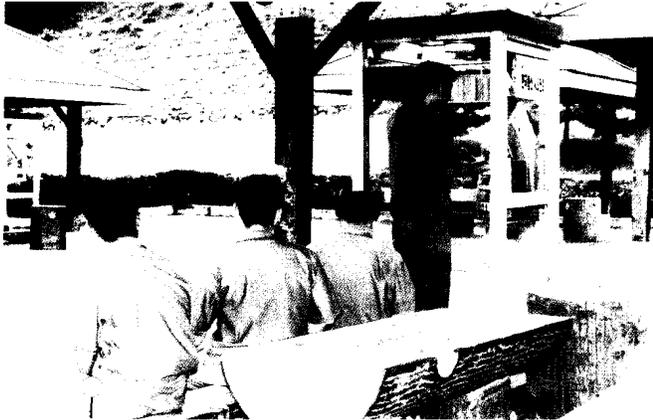
또한, 被保護監護者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장소(정원 등)에서도 접견을 허가하고 있다.

나. 書 信

수용자가 친족에게 발송하는 書信의 回數는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模範收容者 接見



收容者 公衆電話 使用

있으며 서신의 작성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일요일이나 휴일 또는 휴게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수용자가 書信을 自書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代書하여 주고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다.

다. 電話使用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4월부터 모범수
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1級 月5回, 2級 月3回), 처우상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外部交通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전화
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며 허용범위는 친족에 한하고 감청동의 후 사용
이 가능하다.

5. 處遇制度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 등의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개별처우
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9. 5. 13. 矯正累進處遇規程(법무부 훈령 제111호)을
제정, 시행해오다 1991년 3월 14일 受刑者分類處遇規則(법무부령 제348호)으로
개정한 후 다시 네차례 더 改正을 하여 단계적 분류수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각 수형자의 행형성적에 상응한 처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9. 12월 현재 전
국 17개 교정기관에서 分類審査課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
화된 분류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 分類審査

(1) 分類審査의 對象

분류심사의 대상은 적용제외자와 심사유예자를 제외한 全 受刑者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제외자는 순수한 노역장 유치자·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자·구류 및 피

감치자·일시수용자를 말하며, 심사유예자는 집행할 형기가 3월 미만자·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자·규율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기타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자를 말한다.

(2) 分類審査의 時期

분류심사는 新入審査와 再審査의 2종으로 구분하고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예비회의 또는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分類審査

(3) 分類審査 方法

분류심사는 수형자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하는 것이다.

(4) 分類級의 判定

분류급은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및 처우급으로 구분하여 분류급에 따른 분류수용과 처우의 중요지침을 제시하여 악성 범죄의 감염을 방지하고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용급은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시설안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이고, 개선급은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에 따라 수용하여야 할 시설 및 책임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분류급을 말한다. 또한 관리급이란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류급을 말하고, 처우급이란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분류급이다.

나. 累進處遇

(1) 目的

누진처우는 재판에 의하여 선고된 自由刑의 刑期를 수개의 단계로 나누어 그 반성과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분발노력을 촉구하고 전도에 희망을 주어 自力에 의한 改善을 유도함에 있다.

(2) 實施方法 (點數制)

누진처우의 단계는 제4급, 제3급, 제2급, 제1급의 단계로 나누어 각급마다 일정한 責任點數를 부여하여 매월의 소득점수(소행, 작업, 상훈)로 이를 공제, 책임점수를 완전소각하였을 때에 상위계급에 진급시키고, 상위계급에 진급함에 따라 處遇를 완화시킴으로써 社會復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집행할 형기가 6월 미만인 자, 환자, 임산부, 고령자 등을 급외자로 규정하고 급외의 등급을 가급·나급·다급 및 라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단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급외자의 등급별 처우기준은 가급은 제2급과, 나급은 제3급과, 다급은 제4급과 각각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하였다.

(3) 責任點數의 算定 및 所得點數의 採點方法

① 責任點數

각 계급의 책임점수는 執行할 刑期(형의 확정일 기준)를 月로 환산하여 이에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범수 및 개선급별에 따른 점수는 초범과 누범으로 나누어 분류심사에 의한 개선급에 따라 초범은 “A급 2점”, “B급 3점”, “C급 4점”, 그리고 누범은 “A급 2.5점”, “B급 3.5점”, “C급 4.5점”으로 한다.

② 所得點數

소득점수는 매월 이를 채점하되 득점은 최고 素行點數 6점, 作業點數 6점, 賞勳點數 3점으로 하고, 소행점수와 작업점수는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채점하되 수와 우는 작업장 인원에 비례하도록 하였다.

6. 矯正敎化

가. 矯正敎育

(1) 概況

敎育刑主義의 궁극목적은 犯法者에 대한 矯正敎化 作用을 통하여 그 범죄적 심성을 근본적으로 醇化, 再犯에 이르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社會에 復歸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矯導所에서는 收容者 각자의 개성과 특질에 적합한 矯正敎育을 실시함으로써 矯正效果를 극대화하고, 宗教·敎化委員·자원봉사자 등 矯正參與人士의 敎化활동을 활성화시켜 社會와 연계한 矯正敎化 活動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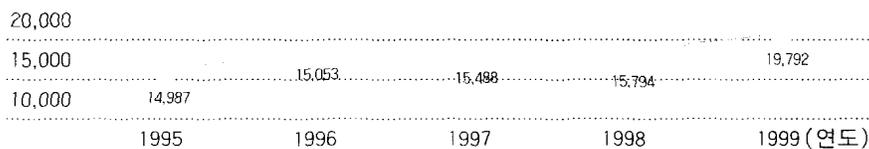
受刑者 精神敎育

(2) 精神敎育

受刑者들의 심성을 순화하여 이들의 비뚤어진 意識構造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한 受刑者 一般精神敎育을 연1회, 매회 2주간씩 실시함과 동시에 청송제2교도소에서는 조직폭력, 인신매매범등 特定強力犯을 대상으로 근로적응훈련을 가미한 特別精神敎育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심성순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편, 각 교정시설마다 신입자 생활敎育을 통하여 수용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고, 석방전 敎育을 실시하여 社會생활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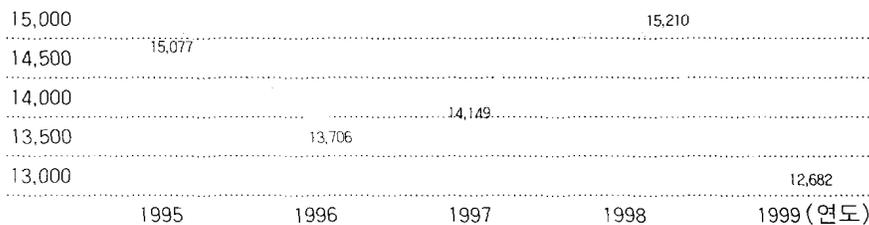
一般精神敎育

실시인원(단위/명)



特定強力犯 精神敎育

실시인원(단위/명)



(3) 學科教育

學科教育은 수형자의 학력정도에 따른 一般學科 教育和 放送通信高等學校 教育, 學士考試 教育으로 구분 실시하며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는 등 학업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① 一般學科 教育

受刑者 중에서 學校課程 教育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初, 中, 高等學校 수준의 학과교육 과정을 설치, 1년을 수업년한으로 하여 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一般學科教育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공인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매년2회 檢定考試에 應試시켜 학력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1,405명이 응시하여 1,193명이 합격, 84.9% 합격율의 좋은 實績을 거두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資格과 素養 및 假釋放 要件을 갖추고 있는 受刑者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大學入學 試驗에 應試토록 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18명의 수형자가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一般學科教育 실적 (단위 : 명)

구 분 연 도	一般學科教育 실적				
	계	초등 기초반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1995	1,531	217	212	524	578
1996	1,399	328	165	413	493
1997	1,473	210	180	538	545
1998	1,633	400	158	519	556
1999	2,367	199	180	882	1,106

② 放送通信高等學校 教育

少年受刑者에게 사회의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82. 3. 14. 金泉少年矯導所에 김천중앙고등학교 부설 放送通信高等學校를, 1991. 1. 10. 天安少年矯導所에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放送通信高等學校를 각각 설치하여 정규 高等學校課程 教育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설치 이후 2000년까지 총 731명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放送通信高等學校 卒業人員

(단위 : 명)

학년도 소 별	누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464	46	49	67	59	46
천안(소년)	274	29	20	24	19	18
김천(소년)	190	17	29	43	40	28

③ 學士考試 教育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방지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로 知的能力을 培養하여 出所後 자립갱생 기반조성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대상자를 선발하여 대전, 청주, 청주여자, 춘천, 청송제1·2보호감호소, 안동, 목포교도소에 집결시켜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 11개 전공분야의 학사고시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명의 학사를 배출하였다.

學士考試 教育人員

(단위 : 명)

구 분 연 도 별	실시인원	실 시 기 관	비 고
1995	53	• 3개기관 : 대전, 청주(교), 춘천	
1996	71	• 6개기관 : 대전, 청주(교), 춘천, 청주(여), 청송 1·2(감)	
1997	65	위와 같음	
1998	84	위와 같음	
1999	122	• 8개기관 : 대전, 청주(교), 춘천, 청주(여), 청송 1·2(감), 안동, 목포	

④ 外國語 會話 및 컴퓨터 專門教育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취업과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켜 出所後 사회정착에 용이하도록 1999. 10. 1. 의정부 교도소에 어학실습실과 컴퓨터 교육실을 설치하여 영어·일본어 회화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모범수용자 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전문교육은 미국과 일본인 강사를 초빙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외국어 회화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교도소에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受刑者 外國語 教育

⑤ 學科教育 重點矯導所 運營

전국 38개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분산 실시하고 있는 수형자 학과교육은 교육 설비 미흡, 유자격교사 부족 등 현재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열악한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하여 학과교육 실질화에 기여하고자 1999. 1. 1.부터 춘천·안동·공주·목포교도소를 고등과 중점교도소로, 논산구치지소를 중등과 중점교도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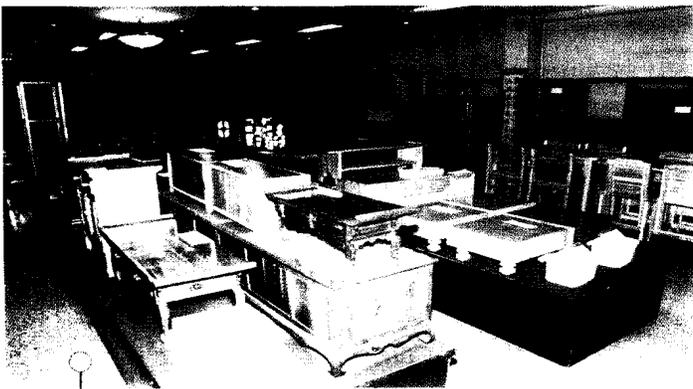
대상인원은 각 교도소별로 40명이며 각 지방교정청에서 선발하여 해당 교도소로 집결시키며, 지도강사는 직원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고,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 敎化活動

受刑者의 素質을 발굴하고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精神과 社會適應力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專門家의 협조를 받아 수형자 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才能이 있는 者에 대하여 각종 운동, 서예, 회화, 악기연주, 문예등 藝·體能敎育과 敎養誌 發刊 등 情緒活動을 전개하며, 아울러 종교생활을 통한 심성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1) 矯正作品展示會 開催

受刑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文藝活動 및 技術訓練을 통하여 갈고 닦은 작품을 한 곳에 모아 矯正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범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넓혀 나가하고자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全國 矯正作品展示會를 開催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교도작업제품 및 수용자, 교도관, 경비교도의 서예, 한국화, 양화, 시화, 자수 등 총 793작품이 출품하였고, 그 중 506작품이 입상하여 광주남도예술회관에 전시되었다.



矯正作品展示館(영등포교도소)

(2) 스카우트 活動

천안소년교도소에 忠義隊(1953. 7. 28.)와 김천소년교도소에 花郎隊(1957. 7. 11.)가 發隊되어 스카

우트 교육과 훈련을 소년수형자의 교정교육에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2,0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훈련목표를 애국심, 인격, 건강, 기능, 봉사에 두고 매년 소년 간부훈련을 실시하고 월 1회 隊集會, 주 1회 組集會를 실시하고, 신입대원은 1주간의 기본교육을 받고 있다.

제17회 세계잼버리('91. 강원도 고성), 제17회 아·태잼버리('96. 강원도 고성), 제7회 국제야영대회('97. 덕유산) 등 야영 대회에 참가하여 세계 스카우트 형제들과 나란히 야영활동을 하였으며, 管樂合奏團은 매년 연주회 및 공연을 통하여 유관기관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忠義少年團 野營訓練

(3) 收容者 相談強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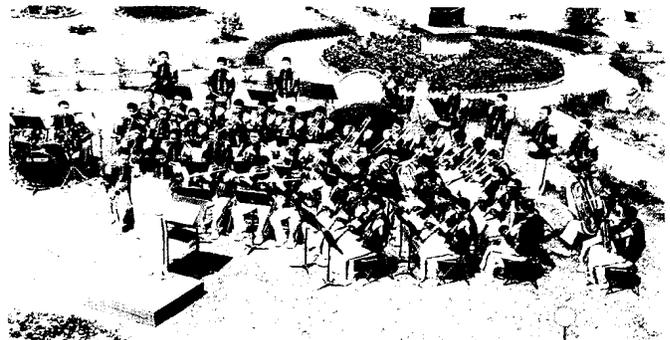
수용자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소외감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쉽게 좌절하고 희망을 잃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矯正職員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많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教誨職公務員을 중심으로 직접 상담을 하거나 혹은 教化·宗教委員들을 자매결연 형태로 연계시켜 수용생활을 감내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特定強力犯에 대하여는 교정직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그들로 하여금 規律을 준수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宗教委員 相談

(4) 演劇·音樂 등 發表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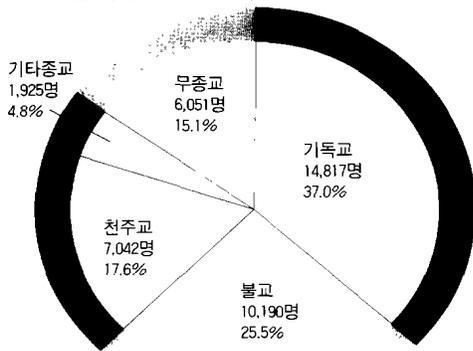
天安少年矯導所 忠義少年團 연극부는 1991. 12. 20, 「까막소의 하얀망아지들」을 공연한 이래 1999. 11. 24. 天安市民會館에서 『아버지』란 주제로 제9회 연극공연을 開催하였고, 충의 심포닉콘서트밴드는 11회에 걸친 정기연주회를 하였으며, 청주여자교도소의 합창단과 천안소년교도소의 사물놀이패는 1998년부터 「간헐자들의 열린음악회」를 공연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心性醇化를 위하



管樂合奏團(천안소년교도소)

여 같고 님은 藝能을 마음껏 펼쳐보이고, 지역사회와 가까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가족들에게도 演劇內容은 물론 진지한 公演姿勢를 통하여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참 모습을 보여주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受刑者 宗教別 現況 ('9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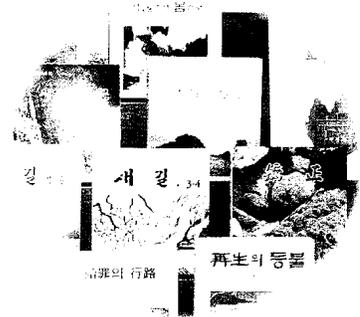
(5) 宗教指導

宗教歸依에 의한 心性醇化로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삶을 지향하도록 1983년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을 宗教委員로 위촉하여 수형자에게 종교별 교회, 교리지도, 종교의식 및 행사 등을 통하여 수용생활중 신앙생활 지도는 물론 출소후에도 信仰生活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 教化誌 發刊

收容者 教化用 도서인 『새길』은 1948년 창간한 이후 지금은 격월로 1회 발간·

배포하여 수용자들의 矯正教化 및 情緒醇化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문예란에 작품을 발표케하여 文藝素養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교정시설 단위로는 所內新聞을 격월 1회 발행하여 수용자 自治活動 및 文藝發表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새길』 부록으로 직원 및 교정참여인사의 教化성공수기와 수용자 갱생수기를 담은 교정수기집을 발간하고 있다.



(7) 圖書閱覽

교정시설내에서의 생활은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올 뿐 아니라 범죄수법의 악습 감염 등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생활 기간중 독서를 적극 장려하여 사회정보와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1988년 11월부터 教化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가 아닌 한 열람을 허가하는 등 도서열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1998. 5. 1.부터 교정풍토 쇄신을 위한 3대 의식개혁을 전개하여 거실내에서 책읽는 시간을 설정하고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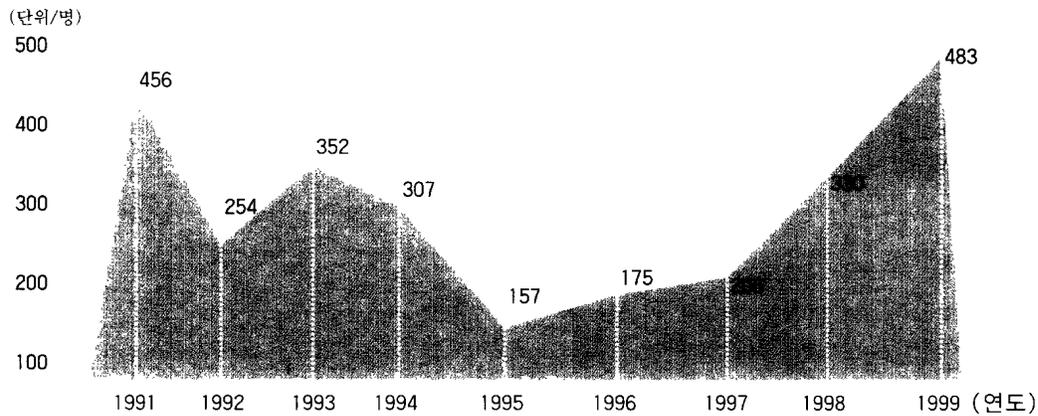
독후감에 대하여는 각 기관별로 시상하고 있다. 도서는 관본도서를 도서실에 비치·대여하고 사책(私冊)은 그의 가족 등으로 부터 받아 열람시키고 있다.

다. 社會復歸 促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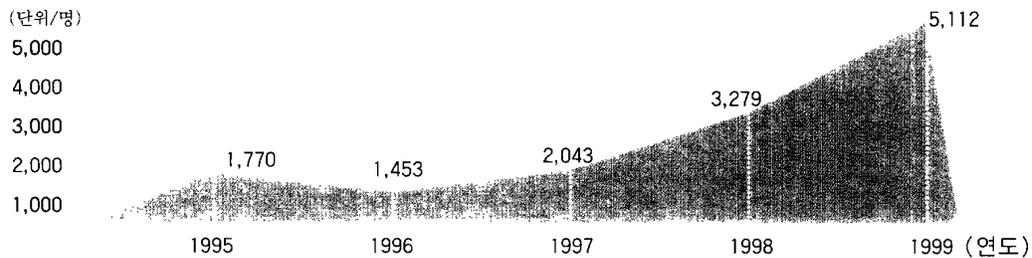
(1) 歸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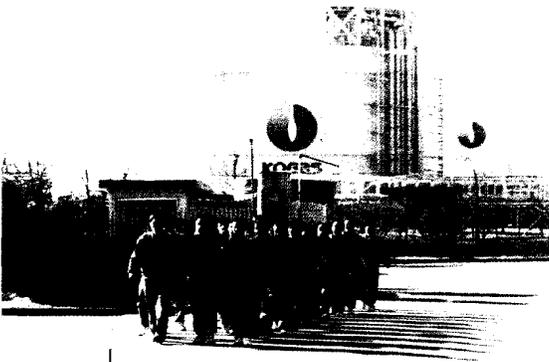
歸休制度는 일정기간 복역하고 行刑成績이 우수한 受刑者에 대하여 外出, 外泊을 허가하는 制度로서 이는 석방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켜 社會適應能力을 키워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1999. 12. 28. 行刑법 개정으로 부모사망, 자녀혼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귀휴를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1999. 7. 10.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휴기간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하고 있다. 1962년 귀휴시행 이후 1999년까지 총 12,691명에 대하여 歸休를 실시하여 출소후 社會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歸休 實績



社會見學 實績





社會見學



家族合同接見

(2) 社會見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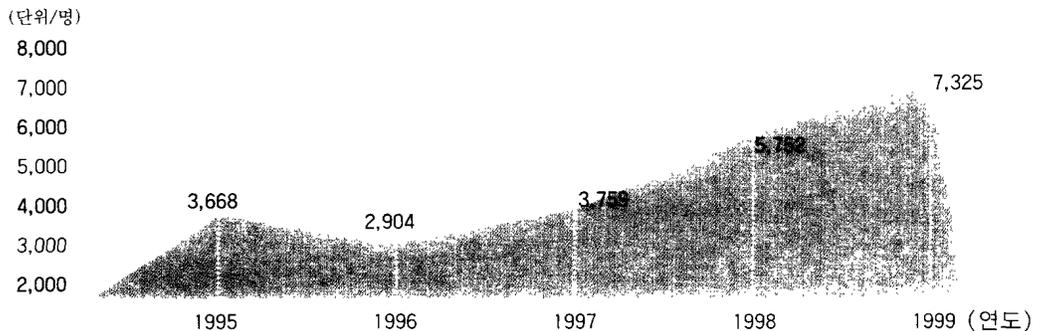
拘禁生活에서 오는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弊害를 줄이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社會의 實狀을 몸소 체험케하기 위하여 社會施設의 견학을 통한 現場 教育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5,112명의 수형자에 대하여 문화 유적지, 산업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견학케 하였다.

(3) 家族 合同接見

교도소내 정원 등에서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합동접견은 우량수형자의 社會適應力 培養과 무기수형자 및 고령자에게 가족과의 유대감 조성을 통하여 수용생활 중 심적안정을 기하고 矯正行政에 대한 가족 및 일반사회인의 협조와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再犯防止 效果를 높이고 있다.

1993년부터 누진계급 2급이상의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연 2회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98. 5월부터 그 대상자를 누진계급 3급까지 확대하고 횟수도 연 4회이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合同接見 實績



(4) 「夫婦 만남의 집」 設置 運營

長期刑을 받은 모범수용자 또는 가족과의 만남이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안양·대구·대전·광주교도소에 부엌과 침실을 갖춘 「부부 만남의 집」을 설치·운영하여 장기구금으로 소원해진 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 가족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식과 기능연마에 전념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 6. 29. 설치한 「부부 만남의 집」은 13평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모범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1박 2일간 생활할 수 있으며 1999년도에는 136명의 수형자가 「부부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혜택을 받았다.



부부 만남의 집(안양교도소)

(5) 新聞閱覽 및 라디오, TV 視聽

사회로부터 격리수용된 수용자에게 급변하는 社會實情이나 각종 情報을 提供하여 출소후 社會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8년 11월부터 신문열람이나 TV 및 라디오 시청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모범수형자, 가석방 예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TV시청을 '98년부터 대폭 확대하였으며, 2002년까지 모든 수형자 거실내에 TV모니터를 설치하여 방송매체를 이용한 교 육교화방송으로 수형자의 심성순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6) 福祉擔當官制 運營

수용자의 고충해소와 福祉向上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 在所者 福祉擔當官制를 신설한 이래, 各所마다 3-6명의 專擔職員을 배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수용자 생활지도 및 상담, 취업알선, 출소후 생활대책 협조 등 수용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福祉擔當官 活動 實績 (99. 12.)

추진내용	인원(명)
· 생활지도 및 상담	111,278
· 취업알선	135
· 자매결연 주선	4,916
· 보호의뢰 (갱생보호공단)	7,434
· 생활부조 (불우수용자 및 가족돕기)주선	23,130

(7) 受刑者 自治制 施行

수형자의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형자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기상시까지 자율적인 사동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 시간 중에는 자치수형자가 불침번 근무를 하는 제도로 1999. 2. 1.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형자 자치제 대상은 누진계급 1·2급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자, 구외출역자, 관용부, 교육훈련생과 소장이 자치수형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자치회는 분임과 자치총회를 두고 자치회의 의사결정은 자치총회에서 결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라. 矯正參與 擴大

교정·교화사업은 교정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정에 관심이 있는 지역내 덕망있는 인사와 종교인 등을 教化·宗教委員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교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教化委員 制度

1970년도부터 教育者, 社會事業家등을 教化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용자 개인상담, 자매결연, 교화공연, 취업알선등 수용자에 대한 支援을 함과 동시에 교도소와 지역사회간의 유대증진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教化委員 現況 ('99. 12.)

(단위 : 명)

구분	교육	법 조	사회사업	실업	의료	공무원	기타
인원							
총 1,718명	151	59	136	977	85	44	255

教化委員 主要 活動實績

(단위 : 명)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상	담	7,120	7,471	6,523	7,576	14,022
교	화 강 연 (회)	845	737	834	814	732
자	매 결 연	870	797	608	822	481
불	우수용자 및 가족지원	1,388	1,290	950	1,087	2,769
취	업 알 선	28	25	19	13	12

(2) 宗教委員 制度

교화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宗教歸依에 의한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므로 종래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독지종교인의 교화활동을 집약, 체계화하고 교정의 사회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덕망있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을 수용자 종교위원으로 위촉, 수용중은 물론 출소후에도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宗教別 教誨의 주관, 교리지도, 종교 카운셀링, 자매결연 주선 등을 통하여 수용자 신앙지도 및 심성순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宗教委員 現況 ('99. 12.)

(단위 : 명)

구분 인원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총 1,407명	700	442	260	5

宗教委員 主要 活動實績

(단위 : 명)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교리지도	67,277	72,204	72,418	66,646	72,568
신앙상담	24,888	26,379	22,264	24,215	26,745
자매결연	2,642	2,846	3,078	2,808	2,327
불우수용자 및 가족지원	14,856	10,881	5,529	8,120	14,846
교화도서 기증(권)	18,031	10,330	7,349	4,303	5,664
취업알선	32	21	21	20	16



法務部 矯正委員 中央協議會 創立總會

(3) 法務部 矯正委員 中央協議會

현대사회는 여러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인 전국의 교화·종교위원을 체계적으로 결집하여 1998년 11월 26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중앙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과 교화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기독교·불교·천주교분과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그동안 주로 개인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정교화 활동을 좀더 체계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교정위원(교화·종교위원) 전체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성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7. 矯導作業

가. 概 要

矯導作業은 矯導所 등에서 矯正作用의 일환으로 受刑者에 대해 부과하는 定役으로서 作業을 통하여 受刑者에게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으로 갱생복귀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作業收益金은 矯導作業特別會計 세입금으로 하여 부수적으로 國家財政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 運營形態

需要者의 形편과 注文 및 作業시행방법에 따라 直營作業, 委託作業, 勞務作業, 官用作業의 형태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矯正施設의 특수한 여건과 矯導作業의 목적실현에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 直營作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 矯導作業特別會計의 設置

矯導作業의 영세성 및 낙후성을 타개하고, 운영의 합리화로 自給自足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矯導作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61년 矯導作業特別會計法을 제정하고 矯導作業의 전수입을 歲入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歲出로 하는 特別會計制度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矯導作業(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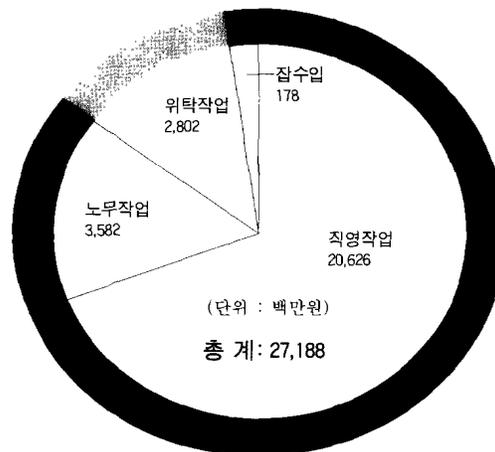
라. 矯導作業官用主義의 採擇

矯導作業은 受刑者의 勤勞精神 함양과 技術習得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國家歲入을 증대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作業量 확보가 필요하므로 1962년부터 矯導作業官用法을 제정하여 國家機關 및 地方公共團體, 國營企業體 등에서 矯導作業 製品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民間企業壓迫을 피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마. 運營現況

全國 矯導所 등에 공장을 설치하고 木工, 印刷工, 縫製工 등 30개 직종의 作業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도 총 豫算規模는 약360억원이고, 1일평균 25,138명의 受刑者가 취업하였다.

'99 矯正作業 生産實績



• 교도작업 주요종목

木工, 印刷工, 縫製工, 畜産工, 織造工, 編織工, 醬油工, 食品工, 營農工, 鐵工, 신발工, 洋靴工, 블록工, 스테인레스工, 石工, 化粧紙工, 기타 委託工이 있다.

99년도 矯導作業 豫算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실 적
세 입	36,000,000	37,647,448
세 출	36,000,000	26,123,511

바. 作業賞與金 및 弔·慰勞金

(1) 作業賞與金

作業賞與金은 受刑者가 出所후 生計基盤 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恩惠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一般作業賞與金, 特別作業賞與金으로 구분하고 있다. 一般作業賞與金은 모든 就業者에게 作業技能에 따른 등급과 行刑成績를 참작하고 作業時間에 따라 매일 日額을 계산한 후 매월 지급, 은행에 예탁관리함으로써 이자의 증식으로 인한 획기적인 처우향상 효과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1일 최고 4,000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特別作業賞與金은 1987. 3.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刑執行期間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8년이상 취업한 자중 作業 및 行刑成績이 우수한 長期 受刑者가 假釋放으로 出所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長期 受刑者가 出所후 一般作業賞與金으로는 生計對策을 마련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본인의 一般作業賞與金 계산총액의 범위내에서 100%까지 가산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作業賞與金 支給基準表

(단위 : 원)

구 분 류 별	기술작업·중노동			단순작업·경노동			관용작업·직업훈련		
	1 류			2 류			3 류		
누진 계급 등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2급	4,000	2,300	1,200	950	850	750	700	650	600
3·4급	2,500	1,600	1,100	850	750	650	600	55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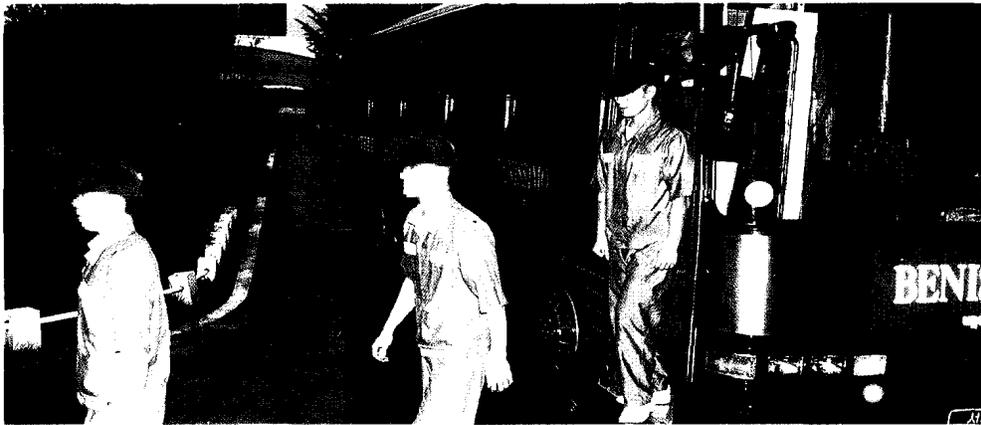
(2) 慰勞金 및 弔慰金

作業中 事故로 인하여 신체에 障碍를 입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慰勞金과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에게 지급하는 弔慰金은 勤勞基準法 第83條 災害補償表와 同施行令 第43條 身體障害等級表상의 障害程度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慰勞金은 최고 12,528,000원, 弔慰金은 최고 13,260,000원까지 각각 지급하고 있다.

사. 外部通勤作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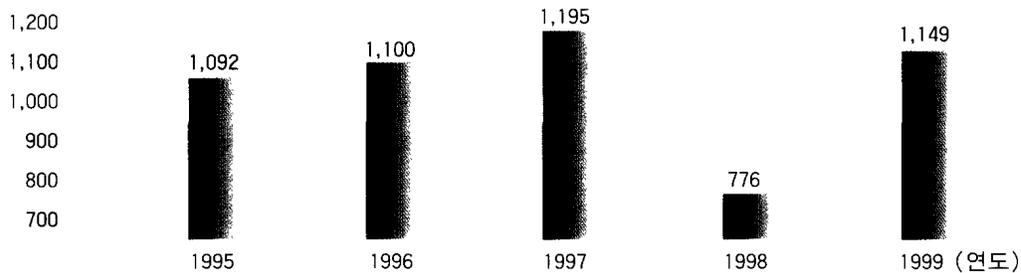
外部通勤作業은 開放處遇者 및 模範受刑者가 교정시설 밖의 外部企業體에 就業하여 通勤作業하는 制度로서 收容者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시켜 社會適應能力을 배양하고 釋放後 就業을 용이하게 하여 自立更生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再犯防止 효과를 얻기 위한 制度이며, 1999. 3월부터는 교도관의 감시없이 수행자 스스로 외부기업체에 출퇴근하는 무계호외부통근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外部通勤

최근 5년간 外部通勤作業 就業人員(일평균)

(단위/명)



아. 監護作業

監護作業은 社會保護法 第7條에 의거하여 監護處分을 받은 자가 作業을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就業을 시키고 있는데, 勤勞情神涵養과 技術習得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一般會計 豫算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靑松第1 및 第2保護監護所 등 2개 시설에서 악세사리, 縫製, 電子部品組立 등 6개 직종에 걸쳐 1일 1,500여명의 감호자가 就業을 하고 있다.

99년도 監護作業 生産實績

(단위 : 천원)

총 계	위탁작업	노무작업	잡수입
411,620	406,382	2,948	2,290

監護者의 근로에 대한 報償金은 1일 최저 1,100원에서 최고 4,8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일액표는 다음과 같다.

勤勞報償金支給 日額表

(단위 : 천원)

등급	1	2	3	4	5	6	7
계산액	4,800	3,900	3,100	2,400	1,900	1,400	1,100

8. 職業訓練

가. 概要

受刑者들이 技術이 없을 경우, 출소후에도 안정된 職業을 얻지 못하고 社會의 冷帶속에서 결국 再犯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犯罪로부터 社會를 保護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수형자들에게 대한 내실있는 職業訓練이 필요하다. 특히 高度産業社會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就業이 용이한 職種 중심의 職業訓練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1969년부터 전국 30개 교정시설에 公共職業訓練所를 설치하여 1인 1技의 목표아래 각자의 직업적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비, 건축, 전기분야 등

54개 직종에 대하여 6월내지 2년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고급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내 우수기업체 훈련원에 출장직업훈련을 실시, 산업현장과 연계한 훈련으로 출소후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재범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의정부교도소 등 10개 교정기관에서



職業訓練(자동차 정비)

컴퓨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쇄기술 등 시대에 뒤떨어진 직종의 훈련을 폐지하고 컴퓨터 수리, 애니메이션, 피부미용 등 12개 훈련과정을 신설하였다.

나. 職業訓練의 種類

수용자 직업훈련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97. 12. 24, 법률 제5474호)에 의하여 시행하는 公共職業訓練과 同法の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一般職業訓練, 그의 外部出張職業訓練으로 區分하여 施行되고 있다. 1999년도에는 公共職業訓練 3,807명, 一般職業訓練 337명, 外部出張 職業訓練 225명 등 총 4,369명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1) 公共職業訓練

公共職業訓練은 양성훈련과 정예훈련, 향상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훈련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養成訓練

技能士 자격취득을 목표로 기능에 대한 기초과정이 필요한 자와 학력부족자들을 대상으로 自所에서 기초적인 기능을 연마시키는 훈련이다.



② 精銳職業訓練

영등포, 청주, 순천, 천안소년교도소 등 4개 精銳職業訓練所에 집결시켜 技術訓練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1999년에는 636명에 대하여 광고도장, 선반등 13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③ 向上訓練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技能士 자격취득자 및 중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소지자로서 自所 또는 정예직업훈련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2) 一般職業訓練

一般職業訓練은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같고, 고급훈련은 다음과 같다.

고급기술훈련은 技士 이상의 자격을 취득목표로 기사 전문과정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의정부교도소, 청주교도소, 대구교도소, 원주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3) 外部出張職業訓練

사회내 우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내 職業訓練院에 수형자가 출·퇴근하면서 기능을 연마하는 훈련으로서, 1995년도부터 훈련수료 후 假釋放이 가능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株)대림산업 등 3개 직업훈련원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체의 경영난으로 2000년도에는 훈련계획이 없고 앞으로 경제회복에 따라 재개될 전망이다.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구 분					
계	4,410	4,276	4,160	3,990	4,369
양성·향상 훈련	3,368	3,180	3,067	2,914	3,156
정 예 훈 련	714	540	441	428	557
일 반 훈 련	239	257	265	257	395
외부출장훈련	89	299	387	391	261

다. 技術資格 取得

職業訓練을 修了한 수형자에게 각종 技術檢定에 응시하여 소정의 技術資格을 취득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고 있으며, 1969년 직업훈련을 개시한 이후 1,175명이 기능사1급 자격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112,036명이 각종 技術資格을 취득하였다.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구 분					
계	3,887	3,521	3,434	3,305	3,877
산업기사	130	159	232	267	181
기능사	3,535	3,304	3,107	3,023	3,696
기능사보	222	58	95	15	페지

라. 技能競技大會 參加

각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을 받은 자 중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각종 技能競技大會에 參加시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1999년도에는 216명의 수형자가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지금까지 총 3,029명이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전국대회 입상 실적 : 금 4, 은 2, 동 8, 장려 3)

구 분	연 도					
	1995년 이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2,071	187	180	184	191	216
지방대회	1,829	167	162	168	177	194
전국대회	242	20	18	16	14	22

9. 釋 放

釋放이라 함은 수용자의 구금을 해제하는 행위로서 수용생활의 종료인 동시에 사회생활의 새출발로 矯正處遇의 총 마무리 단계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에게 희망을 주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석방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복귀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釋放事由로는 형기종료, 가석방, 赦免, 형집행면제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만기석방 및 가석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 滿期釋放

만기석방은 수용자가 法院에서 선고받은 懲役 또는 禁錮刑 기간의 형집행을 종료함으로써 구금이 해제되는 법률상의 당연 석방이라고 할 수 있다. 滿期釋放은 석방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석방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석방하기 전 1주일 동안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석방시키고 있다.

나. 假釋放

(1) 許可要件

형법 제72조에 의거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행장이 양호하며 형기의 1/3을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無期刑에 있어서는 성인은 10년, 소년은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假釋放者 出所

(2) 運營方法

- ① 가석방은 수형자 개개인의 改善度를 심사하여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또한 피해자의 감정, 석방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고 있다.
- ② 다만, 癡藥등 向精神事犯, 조직폭력배, 가정과괴범, 범죄단체조직, 소매치기 등은 사회질서 유지면에서 영향이 크므로 그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다.
- ③ 직업훈련생으로 취업이 보장된 자 또는 기능자격 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각종 입학자격 및 졸업자격시험 등 합격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④ 가석방의 허가절차는 법무부장관 소속의 「假釋放審査委員會」에서 가석방유무를 일괄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최종허가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군산교도소)

(3) 假釋放豫定者 生活教育



出所準備教育

가석방은 매월 1회씩, 年 12회 실시하고 있는 바, 가석방예정자를 천안개방교도소 및 군산·마산교도소의 「假釋放豫定者 生活指導館」과 청주여자교도소(여자 수형자의 경우) 등 4개 훈련전담소에 집금수용하여 2개월 과정의 사회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함으로써 출소후 재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假釋放 人員 現況

연도별 가석방 인원현황을 보면 석방인원에 대한 가석방비율이 1986년에 약 29.6%이던 것이 1992년에는 약 30.9%까지 증가하였으나 1995년(11.1%, 2,516명 가석방) 부터는 감소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13.1%(2,614명 가석방)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수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過密收容 解消 차원에서, 假釋放의 法的要件을 갖춘 자중 가능한 한 많은 受刑者들이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審査要件을 다소 완화하여 1998년에는 4,790명(21.1%), 1999년에는 8,559명(35.3%)로 가석방 인원을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假釋放 人員과 全體受刑者 釋放人員

구 분	연 도					(단위 :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가 석 방 인 원	2,516	2,876	2,614	4,790	8,559	
전체수형자 석방인원	22,614	23,797	20,014	22,731	24,242	
가 석 방 율 (%)	11.1	12.1	13.1	21.1	35.3	

※ 소년수 제외

收容者의 權益伸張

수용자의 人權과 權益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行刑法등 關聯法令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에서도 전화사용 허가, 수형자 TV시청 허용, 청원권의 보장, 한자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法에 根據한 矯正行政의 執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收容者 人權保障 制度

가. 所長面談

수용자가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구제 또는 조연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利點이 있다. (行刑法施行令 제9조)

나. 請 願

請願이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자신이 받은 處遇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 法務部長官 또는 법무부장관의 命命을 받고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그 사정을 진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이를 개봉할 수 없으며, 또한 請願에 대한 決定書는 소장이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請願人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行刑法 제6조)

다. 行政審判 등

所長面談이나 請願結果에 대하여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용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교도관의 불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권리침해의 내용이 刑事事件에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각 수용거실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2. 收容者 權益伸張을 위한 최근의 발전

가. 釋放節次 改善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출소자 가족의 불편해소를 위해 '97년 12월부터 법원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석방예정자를 미리 당해 교정기관에서 유선으로 통보받아 석방절차를 마친 후 석방지휘서 접수와 동시에 석방토록 하고 있다.

나. 接見豫約制度 新設

종래에는 면회자가 접견당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接見申請을 하였기 때문에 면회자와 수용자 모두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따라서 면회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으나, '98년 7월부터 면회자가 사전에 전화나 FAX로 접견을 신청하고 당일에는 대기없이 즉시 면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면회자는 물론 수용자의 편익도 도모하게 되었다.

다. 收容者 손목시계 使用 許可

수용자의 자율성 보장 및 규칙적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98년 10월부터 손목시계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허가대상자는 미결수용자, 누진계급 3급 이상자, 피보호감호자 전원이며, 다만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전자손목시계에 한하여 허용한다.

라. 收容者 外出·外泊制 導入 施行



收容者 外出·外泊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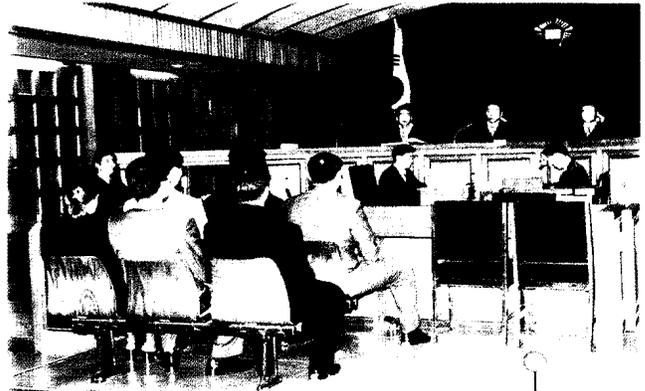
귀휴요건을 갖춘 모범수용자중 가석방예정자, 개방처우대상자, 과실범수용자를 대상으로 평일 또는 휴일에 외출·외박을 허가하고 있다. 외출은 12시간이내, 외박은 연휴기간 동안은 72시간 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취업준비 등 출소전 개인 신상문제 해결로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99년 7월 처음 실시한 이래 294명의 수형자에게 외출·외박을 실시하였다.

마. 戒具使用의 嚴格化

행형법 제7차개정(1999. 12. 28. 법률 제6,038호)에 의거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화 함으로써 수용자 인권신장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바. 未決收容者 私服着用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교정 선진화를 위하여 미결수용자가 재판, 검찰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교정시설 밖으로 외출시 사복을 입도록 하였다. '99년 4월부터 서울구치소 등 5개기관에서 시범실시 후 동년 6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는데, 착용할 수 있는 사복은 정장, 잠바, 셔츠 등 외출복장과 구두, 운동화, 고무신이며 보안이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고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은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未決收容者 裁判時 私服着用

사. 民營矯導所 導入根據 마련

제7차 행형법 개정('99. 12. 28)과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2000. 1. 28.)에 근거하여 교도소등의 설치 및 운영에 민간기업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 절감과 아울러 다양한 치우기법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1년 7월 1일부터 구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民營矯導所 關聯 公聽會

아. 矯正處遇의 持續的 發展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법무부 교정국과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정착하여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해당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행형법의 개정으로 청원권이 강화되고 계구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귀휴요건의 대폭 완화 및 특별귀휴의 신설과 교도소의 민간위탁 경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이외에 최근의 부부만남의

집, 모범수용자 자치제,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외국어·컴퓨터교육 등의 실시는 수형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0년부터는 수형자 두발자유화, 교정시설 종합전산망을 이용한 화상접견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과의 협력체계를 강화시킨 교화·종교위원회에 의한 민원담당위원회, 수용자 고충상담위원 및 교육담당위원 지정 등 선진 교화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발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수용자의 권익을 더욱 신장시키고, 수용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受刑者 自治制



收容者 컴퓨터 教育



收容者와 家族과의 影像接見

전국 교정시설 주소

연 번	기 관 명	우편번호	위 치	DDD	전화번호
1	서울지방청	158-076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 서울출입국	02	655-0721~3
2	대구지방청	705-04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1623-12, 대덕빌딩	053	654-5811~3
3	대전지방청	306-2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042	543-7100~2
4	광주지방청	500-080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062	527-0901~3
5	서울(구)	437-7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	0343	423-6100~7
6	대구(교)	711-8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053	632-4501~5
7	대전	305-2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042	544-9301~3
8	청송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번지	0575	872-9500~1
9	부산(구)	617-013	부산광역시 북구 주례3동 666	051	324-5501~4
10	안양	430-08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0343	452-2181~4
11	광주	500-110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	062	260-8500
12	영등포(구)	152-081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02	02	2611-8100~7
13	성동(구)	138-162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	02	402-9131~4
14	수원(구)	442-19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82	0331	217-7101~7
15	전주	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0652	224-4361~6
16	인천(구)	402-04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278	032	868-8771~5
17	영등포(교)	152-081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00	02	2619-2780~4
18	부산(교)	618-14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028	051	971-0151~4
19	마산	630-020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345	0551	298-9010~4
20	청송 1(감)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	0575	872-9507~8
21	청송 2(감)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	0575	872-9511~2
22	천안(소)	333-830	충남 천안군 성거읍 신월리 산 27	0417	567-3461~3
23	청주(교)	360-2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0431	268-8171~4
24	수원(교)	442-19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163	0331	211-1285~7
25	의정부	480-06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83	0351	842-7601~3
26	청송 2(교)	763-810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55-1	0575	872-4700~2
27	대구(구)	706-0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768-1	053	740-5200
28	춘천	200-71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0361	260-8000
29	김천(소)	740-050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0547	436-2191~4
30	진주	660-910	경남 진양군 대곡면 광석리 700	0591	741-2181~2
31	목포	534-9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0631	284-4101~8
32	군산	573-600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0654	462-0101~3
33	천안(개)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112	0417	561-4301~2
34	순천	540-810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0661	750-2114
35	원주	220-15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4	0371	741-4800
36	안동	760-8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동 121	0571	858-7191~4
37	공주	314-140	충남 공주시 금흥동 360	0416	851-3200
38	울산(구)	689-8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	0522	228-9700
39	청주(여)	360-2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0431	268-8177~8
40	경주	780-850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6-4	0561	740-3100
41	제주	690-162	제주도 제주시 오라 2동 161	064	742-1062~4
42	홍성	350-8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0451	632-2194~5
43	강릉	210-010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20	0391	647-2095~7
44	장흥	529-800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0665	860-9114
45	천안지소	333-830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 27	0417	567-3461~3
46	평택지소	450-140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0333	650-5800~3
47	논산지소	320-940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곡리 34-4	0461	733-2220
■	법무연수원	449-910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 354	0331	288-2300

별 례

(구) ⇒ 구치소 (교) ⇒ 교도소 (소) ⇒ 소년교도소
 (개) ⇒ 개방교도소 (여) ⇒ 여자교도소 (감) ⇒ 보호감호소

기 획 : 법무부 교정과
 디자인 : 한양애드
 발행일 : 2000. 3. 20